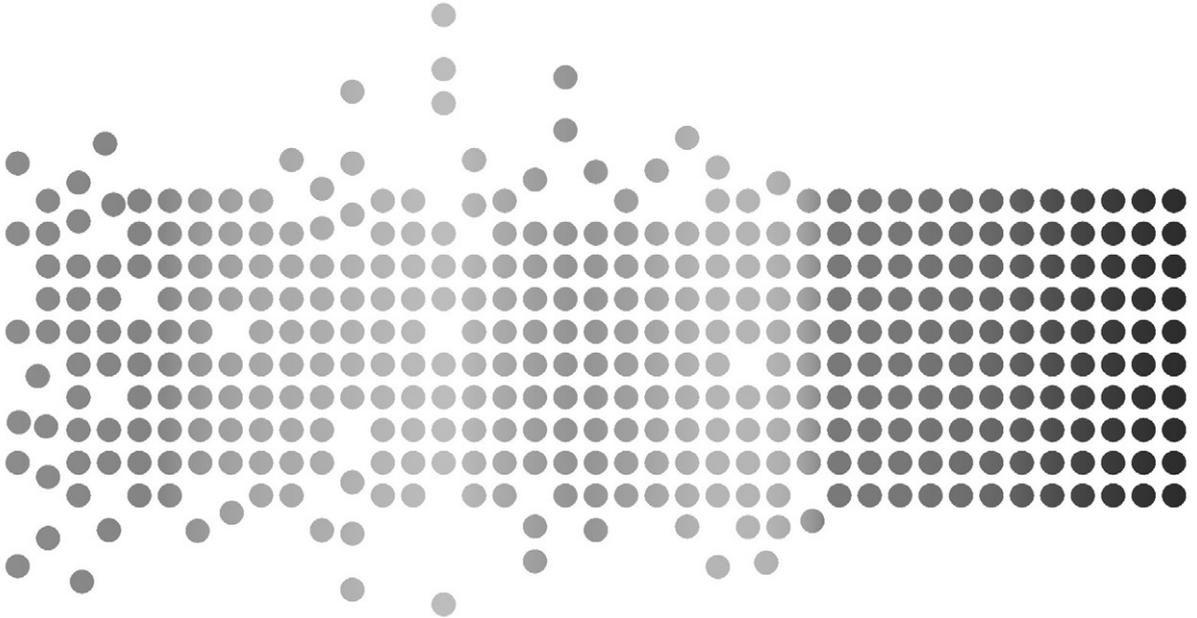


저출산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방안

이미정 외



연구보고서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방안

발행일 2011년 12월
저자 이 미 정 외
발행인 김 용 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 대명기획
가격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869-6 93330

Abstract	1
요 약	3
I. 서론	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2. 연구대상 아동안전의 범위	9
3. 연구 방법	11
가. 2010년도 아동안전 실태조사 자료 분석	11
나. 2010년 아동안전 관련 인터뷰 자료 분석	12
II. 아동성폭력 관련 현황 및 특성	15
1. 아동성폭력의 개념	17
2. 아동성폭력, 발견된 이슈	19
3. 아동성폭력 발굴의 어려움	21
4. 아동성폭력 발생 관련 통계	22
5.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29
가. 범죄자료	30
나. 상담기관 자료	31
6. 아동성폭력 발생의 공간적 특성	33
가. 아동성폭력 발생의 공간적 특성	33
나. 아동안전지도의 예방효과	34
III. 아동성폭력 관련 정책적 대응	37
1. 아동성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39

가.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	39
나. 다양한 치킴이 제도 운용	40
2. 가해자 처벌 강화	42
가. 신상공개제도	42
나. 전자감독 제도	42
다.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의 부족	43
라. 가해자 처벌강화의 한계	43
IV. 외국에서의 아동성폭력 논의	45
1. 아동성폭력 이슈의 등장	47
2. 아동성폭력 피해 발굴의 어려움	48
3. 성폭력 피해 아동 관련 특성	49
가. 피해아동의 특성	49
나. 피해아동의 가족 특성	49
다. 가해자의 특성	50
4.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	51
가.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51
나. 아동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51
다. 부모대상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52
5. 아동성폭력에 대한 홍콩의 대응	55
V.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	57
1. 아동성폭력 피해 발생	59
가. 아동성폭력 피해 발생을	59
나. 아동성폭력 가해자, 피해시간, 피해장소	60

2. 성폭력 피해아동의 특성	64
가. 아동성폭력 피해 유무별 분포	64
나. 성폭력 피해아동의 가정여건	66
3.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적 특징	69
4. 성폭력피해아동의 부모자녀 관계	71
5. 성폭력피해아동의 안전인식 및 위험대처	74
가. 거주지역에 대한 위험 인식 수준	74
나. 통학길에 대한 위험인식	75
다. 위험 공간에 머문 경험	76
라.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	77
마. 성폭력 예방교육 및 안전교육	80
6. 성폭력피해아동의 가해경험	82
가. 성폭력피해아동의 가해유형별 가해율	82
나. 성폭력피해의 반복적 경험	84
7. 분석결과	87
가. 성폭력 피해아동의 특징	87
나. 성폭력 피해아동의 가해경험	88
VI. 지역사회 아동안전 관련 문제점 및 정책욕구	91
1. 학교 내 아동안전 문제점 및 요구	93
가. 아동안전 대책 매뉴얼화의 필요	93
나. 학교 및 방과후 시설 안전경비 시스템 구축	95
다. 안전지킴이 제도의 내실 강화	97
라. 안전사고 발생 이후 학교측의 적극적 대응 강화	98
2. 아동안전을 위한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	100
가. 아동안전 관련 부모교육의 필요성	100

나. 저소득층 아동돌봄 공백 지원	102
3. 방과후 아동 돌봄 지원 확대	104
가. 방과후 보육교사 협의체 구성	104
나.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105
4. 아동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역할 및 활성화	109
가. 지역사회 안전 관련 인프라 개선	109
나.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체계 구축	110
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도니 지역연대의 역할	112

VII. 아동안전 관련 정책 개선방안 117

1. 법 제도의 정비	119
가. 각종 아동·여성관련 법에 ‘안전’ 개념의 법제화	119
나.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120
2. 지역연대의 자기보호 아동 대상 사업 수행	122
3. 아동 안전 교육의 전면적 확대	123
가. 아동 안전 교육 확대	123
나. 교사의 안전 지도(指導)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123
다.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	125
라. 부모 교육의 현실화	125
4. 학교의 안전 지원 기능 확대	127
가. 방과후 자기보호 아동 담당교사 지정	127
나. 학교안전위원회 운영	128
5.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체계화	129
가. 계층통합형 돌봄모델 수립	129
나.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의 운영	129
다. 자율형 돌봄 공간의 운영	130

6. 기존 제도의 실효성 강화	131
가. 초등돌봄교실	131
나. 아동안전지킴이집	131
다.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선	131
라. 아이돌보미 사업의 확대	132
참고문헌	133
부 록	137

표 목차

<표 I-1> FGI 집단의 구성	12
<표 I-2> 지역유형별 FGI 구성 및 진행 현황	13
<표 II-1>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1999-2008)	22
<표 II-2> 성폭력상담소에 의뢰된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 건수(2002-2009)	24
<표 II-3> 2009년 성폭력상담소 아동성폭력 피해자	25
<표 II-4> 피해아동의 성별 비율 및 연령	26
<표 II-5> 아동기 성추행 피해 경험 유무	27
<표 II-6> 아동기 성폭행 피해 경험 유무	27
<표 II-7> 12~14차 신상공개자 자료에 나타난 피해자-가해자 관계	31
<표 II-8> 해바라기아동센터 자료의 피해자-가해자와의 관계	32
<표 V-1> 성폭력피해를 당한 아동의 분포	60
<표 V-2> 성폭력 피해의 구체적 사례: 가해자	61
<표 V-3> 성폭력 피해의 구체적 사례: 피해시간대	62
<표 V-4> 성폭력 피해의 구체적 사례: 피해시간대	63
<표 V-5> 아동성폭력 피해유무별 분포	64
<표 V-6> 성폭력피해아동의 가정여건	66
<표 V-7> 성폭력피해아동의 가정여건(t-test)	67
<표 V-8> 심리적 특성 문항	69
<표 V-9> 성폭력피해아동의 심리적 특성	69
<표 V-10> 가족관계적 특징 문항	71
<표 V-11> 성폭력피해아동의 가족관계적 특징	72
<표 V-12> 거주지역에 대한 위험인식수준	74
<표 V-13> 통학길의 위험인식수준	75
<표 V-14> 통학길의 위험인식수준(T-test)	75

<표 V-15> 위험공간에 머문 경험	76
<표 V-16> 위험공간에 머문 경험(T-test)	77
<표 V-17>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	78
<표 V-18>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T-test)	79
<표 V-19> 성폭력 예방안전교육	80
<표 V-20> 성폭력 예방안전교육(T-test)	81
<표 V-21> 폭력유형별 가해경험: 피해아동과 비피해아동의 가해율	83
<표 V-22> 성폭력 피해아동의 가해경험	84
<표 V-23> 성폭력피해의 반복적 경험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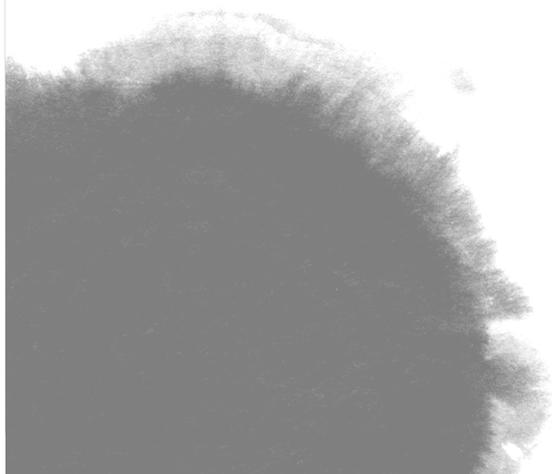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II-1] 인구 10만명당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23
[그림 II-2] 성폭력상담소에 의뢰된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 비율	25
[그림 V-1] 성폭력피해아동의 심리적 특성	70
[그림 V-2] 성폭력피해아동의 가족관계적 특징	73
[그림 V-3] 성폭력 피해의 반복 경험	86



01

서론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0년대 말부터 가시화된 저출산 현상의 지속은 향후 우리나라 사회발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사회적 부양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출산장려’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출산수당 및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는 저출산을 완화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산율 제고 노력과 함께 정책적으로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아동 복지에 관한 영역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출산율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기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복지를 위한 총체적 접근이 요구된다.

아동의 안전은 아동의 복지를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여건이다. 아동안전의 개념은 포괄적이어서, 크게 공간적 및 물리적 맥락에서의 안전과 아동의 사회관계와 관련된 안전의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양육자의 방임 및 아동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부상, 독물에 의한 중독 등으로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의 사회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 학대 및 방임 등으로 인해 안전 위협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안전’이라는 용어는 아동성폭력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잔혹한 성폭력 범죄 발생으로 아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면서 아동 대상 성폭력이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의 대응을 예방과 처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동대상의 잔혹한 범죄에 분노하는 하는 여론에 대응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호응을 얻고 이것이 법제화되어 왔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처벌 강화에 집중하는 것은 성폭력 재발 방지나 아동에게 안전한 사회 환경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 가해자 처벌강화 조치는 아동안전 제공과 관련하여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강은영 외, 2010; 이미정 외, 2010). 사회적 관심이 언론에서 거론되는 심각한 피해를 당한 아동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아동에게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제공하는 데 예방이 중요하다. 아동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관련 예산의 투입은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안전에 대한 논의를 성폭력 위험으로부터의 아동안전 영역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연구의 축적은 미미한 데, 관련 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크고, 정부 부처들은 경쟁적으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예방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논의 및 현황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긍정적 현상이지만, 관련 현상에 대한 연구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정책의 확산은 주의를 요한다. 아동대상 성폭력 발생 양상의 특성에 기반하여 아동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의 다양한 아동안전 대책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및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제안하려고 한다.

2. 연구대상 이동안전의 범위

아동을 위한 안전의 확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동안전에 관한 연구인데, 앞서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이동안전의 범위는 넓다. 우리나라에서 “이동안전”이라는 용어가 아동성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과정에서 확산된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이동안전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선진국에서 논의되는 아동의 안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 아동이 안전하지 않으면 아동기를 즐겁게 지낼 수 없으며, 이들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되기도 힘들다(DCSF, 2008). 서구의 한 정책연구를 보면 부상을 이동안전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European Child Safety Alliance, 2007). 아동은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데, 유럽에서 아동이 부상을 입는 것이 아동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European Child Safety Alliance, 2007). 아동의 부상은 정부 및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예방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부상의 원인은 도로 상에서 발생한 부상, 익사, 추락, 독에 의한 중독, 화상, 질식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European Child Safety Alliance, 2007). 이 연구에서 아동 및 청소년 안전과 관련하여 제시된 영역은, 보행자 안전, 모터 스쿠터 안전, 자전거 안전, 익사 예방, 추락 예방, 화상 예방, 독에 의한 중독 예방, 질식 예방이다. 과거에 비해서 아동의 부상이나 사망과 관련된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아동을 둘러싼 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면 복잡해지고 있다.

아동 안전과 관련된 영국의 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위험 영역은 다음과 같다. 도로 상 사고, 가정내에서의 사고, 부모에 의한 학대와 방임, 낯선 사람에 의한 학대, 집단 괴롭힘, 범죄피해, 가정폭력 및 알콜중독 문제가 있는 부모, 인터넷 안전, 자살 및 자해가 그것이다(DCSF, 2008).

이동안전과 관련된 영역은 한편으로는 아동에 대한 방임 및 아동의 부주의로 공간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아동과 연결된 사회적 관계에서 발

생하는 위험이 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영역이 서로 연계되어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아동안전은 폭 넓은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안전”은 아동이 환경적 요인이나 가족 등 사회관계의 맥락에서 신체적, 정신적 상해나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동안전”이라는 용어가 정책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배경은 아동성폭력 발생과 관련되어 있다. 여아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관련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이미정 외, 2010).

정부의 아동안전과 관련 대책은 아동성폭력 범죄로부터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것들이 많다. 범정부 협의체인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자료를 보면 아동안전과 관련된 대책 중 아동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2010). 2010년 6월 국회에서는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대책 확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국회는 성폭력 위협으로부터 아동이 무방비 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치안체계 확립을 통해 안전 취약 지역을 개선해야 한다고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2011년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홀로 남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조사 및 관련 대책 수립,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표준모델 개발,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보급 사업의 취지 중 지역사회에서 아동성폭력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하려는 목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초등학교 등교 길 및 교정에서 발생한 여아 납치 및 성폭행 사건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배움터지킴 제도를 도입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였다.

1) 국회는 2010년 6월 29일자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과 관련된 아동안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존 문헌, 정부자료 및 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아동성폭력 실태나 지역사회 아동안전과 관련된 실태 파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 2010년도 아동안전 실태조사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방안(II)” 연구에서 수집한 아동안전에 대한 조사자료 분석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아동의 특성을 제시하려고 한다. 2010년 자료는 전국 4-6학년 남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안전에 대한 인식, 등하교길 안전 관련 사항, 주변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인식 및 대처 방법, 개인의 성향, 부모와의 관계, 가정의 경제상태, 성폭력 피해경험을 조사하였다.²⁾ 조사대상은 전국 4, 5, 6학년 남녀 초등학생 4,701명이며, 최대 허용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43\%$ 포인트이다. 조사가 완료된 4,701명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 아동성폭력이라는 민감한 주제로 초등학생을 조사해야 하기에, 아동용 눈높이에 맞는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진 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의 수정 작업이 진행되었다.¹⁾ 설문지 제작 단계에서 조사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하는 작업도 진행하였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178개 산하교육청에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표본추출은 학교를 단위로 한 층화표본추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09년 전국 16개 시도별 전국 초등학교 수의 지역별 분포와 학급수에 따른 학생수의 지역별 분포를 표본추출에 참고하였다. 16개 시도별 전국 초등학생의 비율과 1개 학교당 평균 학생수, 1개 학급당 학생수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필요한 조사대상 사례수와 조사대상 학교수를 산정하였다. 지역별로 학교수가 결정된 이후 각 지역에서의 표본추출은 관할 교육청 장학사에게 해당 지역의 특성을 대표하는 초등학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추천이 어려울 경우 랜덤하게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학교에 대해서 협조를 얻어 4, 5, 6학년 중 2개 학급을 최종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조사대행기관을 통해 2010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의 기간 동안 구조화된 설문지로 방문 및 우편조사로 진행하였다.

나. 2010년 아동안전 관련 인터뷰 자료 분석

본 장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2011년 나홀로 아동 실태 및 아동안전 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수집된 초점집단면접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³⁾ 자료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성폭력 등 위협이나 기타 아동안전사고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안전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주체들에 대한 초점집단면접(이하 FGI)을 진행하였다. FGI 대상자의 선정은 먼저 지역의 도시화 수준에 따라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욕구, 공식적·비공식적 안전망의 실태, 위협 요인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16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모범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으로 분류한 뒤, 대都市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도시는 충북 청주시, 농어촌지역은 전북 군산시를 선정하였다. 각 지역별로 해당 교육청에 연락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초등학교를 추천받아 선정된 후, 선정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관련 집단의 구성원을 7-8명씩 조직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 지역별로 아동안전과 관련된 집단 중 교사, 학부모, 방과 후 보육교사, 지역연대위원 등 4개의 집단의 면접 결과를 분석·정리하였다.

〈표 1-1〉 FGI 집단의 구성

구분	구성
교사	관리직 교원, 평교사, 보건교사 등 직무 및 성별 비율 고려
학부모	나홀로 아동 학부모(조손 가정, 이혼, 맞벌이 가구) 및 일반 부모
방과후 교사	지역아동센터 이동복지 교사 또는 센터장, 방과후 학교 교사, 보습학원 관리직 선생님
지역연대 위원	아동성폭력안전지원 기관 종사자, 지역연대위원

3) 2011년 여성가족부 의뢰로 실시된 『홀로 남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 현황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연구의 참여자는 신경아, 박기남, 정동일이다.

면접조사는 2011년 3-4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FGI의 질문내용은 학교 및 학교 인근 동네의 아동 안전실태와 아동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의 활동, 그리고 아동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욕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달리하였으며, 자기보호 아동의 방과 후 보호 실태에 대해서도 따로 질문을 추가하였다. 세 개 지역의 집단별 FGI의 진행상황은 <표 1-2>에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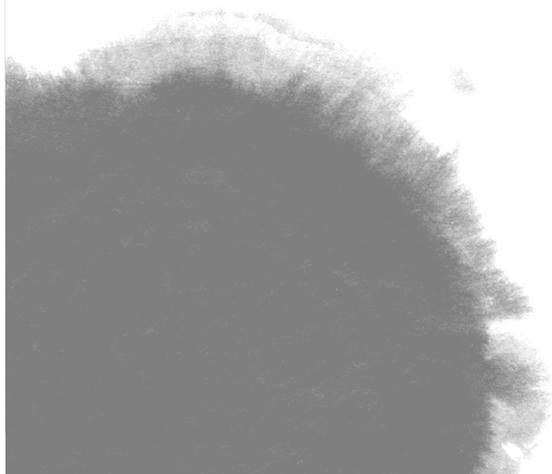
<표 1-2> 지역유형별 FGI 구성 및 진행 현황

유형	조사 지역	대상집단	인원	일시	면접장소
대도시	서울시 동작구	교사	7명	2011.03.18.	B초등학교
		학부모	4명	2011.04.23.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방과 후 보육교사	6명	2011.03.22.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연대 위원	6명	2011.03.15.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소 도시	충북 청주시	교사	7명	2011.03.24.	D초등학교
		학부모	6명	2011.04.08.	충북 여성 민우회
		방과 후 보육교사	7명	2011.03.25.	C지역아동센터
		지역연대 위원	6명	2011.03.16.	홍덕경찰서
농어촌 지역	전북 군산시	교사	7명	2011.03.25.	E초등학교
		학부모	5명	2011.03.16.	F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보육교사	7명	2011.03.23.	F지역아동센터
		지역연대 위원	6명	2011.03.16.	군산 성폭력상담소
합계		18개	111명		



02

이동성폭력 관련 현황 및 특성





11. 아동성폭력 관련 현황 및 특성

1. 아동성폭력의 개념

아동성폭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 우리가 아동성폭력이라고 사용하는 용어가 영어 문화권에서는 아동성학대(Child Sexual Abuse)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에 의하면(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아동성학대(Child Sexual Abuse, CSA)는 가해자의 성적 만족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아동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Wurtele & Kenny, 2010).⁴⁾ 2007년 유럽이사회의 성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제18조에서 아동성학대(Sexual abuse)는 18세 이하인 아동에게 물리적 강제, 협박을 하거나 가족 등 신뢰관계, 권력관계를 악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으로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성적행위를 한 경우를 지칭한다.

영국의 아동·학교·가족부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성학대는 피해아동의 인식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을 강제하거나 기망하여 성적행동 또는 성매매에 관여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4) 영어 문헌에서는 아동성학대(Child Sexual Abuse, CSA)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의미하는 아동성폭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아동성폭력 용어는, 성폭력이라는 용어와 가해대상인 아동이 결합한 용어이다.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여성단체가 주축이 된 반성폭력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이후 성폭력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법률용어로도 활용되고 있다.

and Families, 2009). 여기에는 신체적 접촉, 강간, 유사성교, 추행행위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음란이미지 제작, 아동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목격케 하는 행위,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행동을 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모두가 포함된다(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9).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 제10391호)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⁵⁾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개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기준 상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범죄를 정의한다. 범죄의 내용은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와 동일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범죄의 객체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형법 및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보다 형을 가중하고 있다. 둘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범죄수단과 방법으로 폭행·협박·위계·위력 등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된다. 다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형법 제305조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7조에 따라 피해아동의 동의가 있어도 폭행·협박 등에 의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의제함으로써 특별한 보호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5) 동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한다.

- 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9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하는 행위 등), 제11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2조(알선영업행위 등)
-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죄
- ③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 ④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및 제6호(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의 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를 말한다(제2조 3호).

2. 아동성폭력, 발견된 이슈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동성폭력 문제는 최근 등장한 사회 이슈라고 할 수 있다.⁶⁾ 아동성폭력이라는 현상은 오래 전부터 우리사회에 존재해왔으나, 이것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아동성폭력의 대표적 유형인 친족성폭력의 존재를 유교적 규범이 굳건했던 우리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92년 김보은·김진관 사건은 친족에 의한 아동성폭력 피해가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이명희, 2003). 최근 국내외 연구에 의하면 아동 성폭력 가해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이 피해아동의 친부, 의부 등 가족 및 친족인 경우가 많은데, 유교적 가부장제가 강했던 한국사회에서 피해아동이나 피해사실을 확인한 가족 구성원이 이것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가족 및 사회관계에서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인 아동의 피해를 덮는 경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인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중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2006년 용산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등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형성되면서, 관련 대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서영학, 2008). 민간 차원에서 아동성폭력 근절 캠페인이 전개되고, 정부도 아동성폭력 대책단을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서영학, 2008).

아동성폭력 이슈의 발견은 한국사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해당 이슈에 대한 논의 및 대응이 활발한 미국에서도 1970년대 초반까지도 아동성폭력을 아동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다(Finkelhor, 1984a). 1970년대 중반부터 아동성폭력을 포함한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관련 신고 건수가 폭증하였다(Finkelhor,

6) 아동성폭력 문제가 최근에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인 여성대상 성폭력 문제처럼 아마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이러한 사건이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되고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됐다는 점에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사회 이슈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정 시점으로 기준으로 아동성폭력 같은 행위를 범죄로 보는 시각이 일반화된 것은 일반인들의 인식의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의식이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984a). 아동성폭력 연구의 대기인 핀켈호 교수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은 해당 사건 발생이 급증해서라기보다는 아동보호 및 여성인권에 관심이 많은 민간단체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에서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의 움직임을 보면 사회복지사와 심리학자들은 적극적 관심을 보였다. 반면 초기 대응단계에서 의사 집단, 특히 정신과 의사의 적극적 참여의 부재로 초기 예방이나 대응이 더디게 전개되었다(Corwin, 2011).

3. 아동성폭력 발굴의 어려움

외국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에서도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성인 대상 회고적 연구에 의하면, 가족의 이해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기가 어렵다. 아동기 성폭력 피해를 부끄럽고 창피한 기억으로 생각하다가 청소년기 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신의 경험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이미경, 2007). 수치심과 자책감으로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고 감추고 지낸다. 또 용기를 내어 사실을 밝혀도 가족 등 주위사람들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 피해자가 드러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가족 해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사건을 덮고 피해자가 침묵을 지키기를 바라기도 하며(이미경, 2007), 이것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이 혹은 피해를 경험한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피해경험을 가족 등에게 말하기란 쉽지 않다. 아동성폭력이 잘 보고되지 않는 이유이면, 실제로 발생한 많은 사건은 드러나지 않고 덮여 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4. 아동성폭력 발생 관련 통계

국내외 연구에 의하면 성인 성폭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성폭력 피해도 잘 보고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성폭력 관련통계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사법기관이 집계하는 범죄통계, 성폭력 상담소 통계, 조사연구를 통한 통계이다. 범죄통계는 공식적 통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신고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한 건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연구 통계는 범죄통계보다 발생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이 성폭력과 같은 범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조사연구가 중요한 이유이다.

〈표 II-1〉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실태(1999-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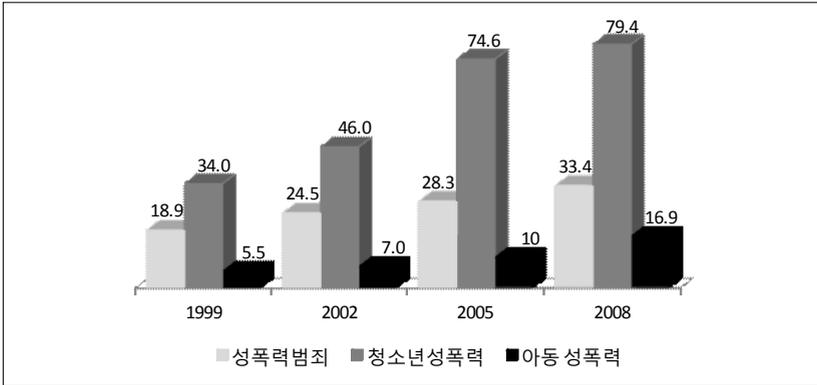
		1999	2002	2005	2008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8,830	11,688	13,631	16,234
	전체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18.9	24.5	28.3	33.4
청소년 성폭력	발생건수	2,071	2,509	3,842	4,192
	전체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4.4	5.27	8.0	8.6
	청소년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34.0	46.0	74.6	79.4
아동 성폭력	발생건수	478	595	785	1,194
	전체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1.0	1.25	1.6	2.5
	아동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5.5	7.0	10.0	16.9

자료: 이미정 외(2010).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방안(II)』 p. 17.

주. 1. 청소년은 13세 이상 20세 이하, 아동은 12세 이하를 말함.

2. 범죄통계는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 인구통계는 통계청 자료에 근거

[그림 II-1] 인구 10만명당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자료: 위의 표 <II-1>을 토대로 작성.

주: 성폭력범죄는 전체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청소년성폭력은 청소년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아동성폭력은 아동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임.

공식 범죄통계가 발표하는 1999년과 2008년 기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발생에 대한 내용인 <그림 II-1>에 제시되고 있다. 해당기간 전체 성폭력 발생건수는 1.8배, 청소년 성폭력 2배, 아동성폭력은 2.5배 증가하였다. 공식 범죄통계에 집계된 범죄통계의 건수가 증가한 것이 실제 발생건수가 증가하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고 경향이 증가하여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통계는 신고된 관련 범죄 건수의 경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발생율을 보면 청소년성폭력은 청소년 인구 10만명당 1999년 34건에서 2008년 79.4건으로 2.3배 증가하였고, 아동성폭력은 같은 기간 5.5건에서 16.9건으로 3.1배 증가하였다. 범죄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법기관에 신고된 피해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 성폭력상담소에 의뢰된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 건수(2002-2009)

(단위: 건,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상담 건수	48,112	51,431	23,284	27,241	27,286	25,443	27,636	33,695
7세미만 비율	1,511 3.1	2,201 4.3	1,063 4.6	1,018 4.2	1,106 4.1	694 2.7	1,194 4.3	944 2.8
7~13세미만 비율	4,087 8.5	4,781 9.3	2,450 10.5	2,885 11.9	2,971 10.9	2,479 9.8	4,127 14.9	4,375 13
13~19세미만 비율	11,635 24.2	10,742 20.9	6,071 26.1	6,528 27	6,176 22.6	6,202 24.4	7,758 28.1	10,287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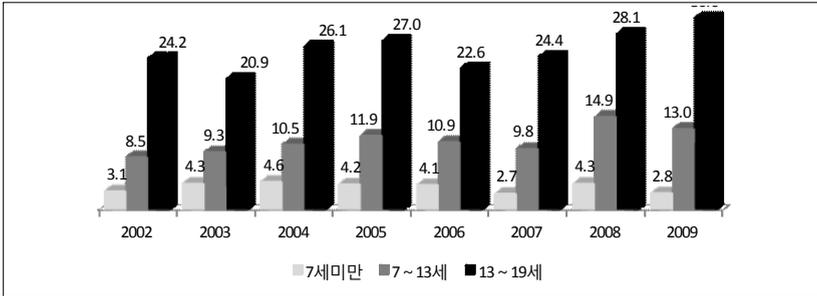
자료: 여성부(2009), 『2009년도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보고』, 이미정 외 (2010). p. 19에서 인용.

- 주: 1. 상담소 개수는 2002년(104개), 2003년(115개), 2004년(124개) 2005년 (172개), 2006년(202개), 2007년(202개), 2008년(196개), 2009년(199개).
2. '02년 ~'03년 실적에 비해 '04년 이후 실적이 감소한 것은 '03년까지는 건수로 표기하였으나, '04년 이후에는 명수로 표기하여 수치가 줄어든 것임.

아동성폭력 관련 통계 자료 중 하나는 전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집계된 아동·청소년 피해 건수이다. <표 II-2>는 2002년과 2009년 기간 전체 상담 건수 중 아동과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건수와 전체상담 건수 중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기간 7세 미만 아동의 상담건수와 이들의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7세-13세의 건수는 2004년에 이르는 시기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13세-19세의 상담 건수도 2004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보면, 7세 미만의 비율은 2.8%, 7세-13세는 13%, 13세-19세는 30.6%이다.

<그림 II-1>의 범죄통계와 <표 II-2>의 상담통계를 비교해 보면, 상담 통계의 건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담소를 방문한 사람들 중 사법기관에 신고한 사람의 비율은 일부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1-2] 성폭력상담소에 의뢰된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 비율



자료: 위의 표 <II-2>을 토대로 작성.

<표 II-3>는 2009년 상담소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성별, 지역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피해아동의 5%가 남아이고, 나머지는 여아인데, 상담소에 피해를 의뢰하는 피해자 다수가 여아인 것을 알 수 있다. 여아 피해자의 지역별 연령 집단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에는 7세 미만 피해자가 30%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그 다음이 충청·강원권 21.2%이며, 경상권과 전라·제주권은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II-3> 2009년 성폭력상담소 아동성폭력 피해자

(단위: 명, %)

시도	성별	계	7세 미만	7-13세 미만
합계	여	5067(100.0)	923(18.2)	4,144(81.8)
	남	252(100.0)	21(8.3)	231(91.7)
수도권	여	1532(100.0)	456(29.7)	1076(70.3)
	남	74(100.0)	11(14.9)	63(85.1)
경상권	여	2324(100.0)	254(10.9)	2071(89.1)
	남	82(100.0)	3(0.37)	79(96.3)
충청강원권	여	485(100.0)	103(21.2)	382(78.8)
	남	43(100.0)	6(14.0)	37(86.0)
전라제주권	여	726(100.0)	110(15.2)	616(84.8)
	남	53(100.0)	1(1.9)	52(98.1)

자료: 여성가족부, '2009년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내부자료, 이미정 외(2010). p. 21에서 인용.

주. 1. 피해자연령: 만 나이로 기재, 작성기간: 2009. 1. 1~12. 31

2. 16개 시도를 수도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전라제주권 권역으로 구분하였음.

13세 미만 아동성폭력의 치료와 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해바라기 센터의 피해자 분포를 살펴보자. <표 II-4>는 2007년과 2009년 기간 서울 해바라기, 대구·경북해바라기, 광주·전남해바라기 아동센터에 대한 자료를 성별 연령별로 정리한 것이다. 해당 기간 7세 미만의 건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7세-13세의 건수는 2008년 이르는 시기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데, 이들의 비중은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기간 증가한 집단은 13세 이상인데,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13세 이상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은 장애인인데, 이들의 피해 상담이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표 II-4〉 피해아동의 성별 비율 및 연령

(단위: 명, %)

		2007	2008	2009
성별	여자	472(85.3%)	464(80.3%)	376(90%)
	남자	81(14.7%)	114(19.7%)	42(10%)
	계	553	578	418
연령	7세 미만	243(44)	213(37.2)	165(39.5)
	7~13세 미만	271(49.1)	302(52.8)	209(50)
	13세 이상	38(6.9)	57(10)	44(10.5)
	계	552	572	418

자료: 각 년도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보고서, 각 년도 대구·경북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보고서, 광주·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 5주년 사업보고서.

이미징 외 (2010), p. 25에서 인용.

- 주. 1. 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등록된 건수 중 피해아동 건수를 분석사례로 삼아, 각 년도별 3개 센터의 사례를 합산한 것임.
2. 위에 제시된 연령 구분은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의 기준으로, 대구경북센터는 만 7세 이하, 만 8세-만 13세 이하, 만 14세 이상으로, 광주전남센터는 만 7세 이하, 만 8세~13세 미만, 만 13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음.

아동성폭력 발생을 보여주는 통계는 범죄통계나 상담통계외에 조사자료를 통해서 수집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 아동은 피해 사실을 부모 등 주위의 신뢰할 만한 어른에게 잘 보고하지 않는다고 한다. 피해당시에는 자신의 경험이 무엇인지 잘 모르다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뒤늦게 성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기도 한다. 2009년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성폭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19세-30세 청년층 남녀에게 취학 전 및 초등학교 기간 성폭력 경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이미정 외, 2009).⁷⁾ 성추행과 성폭행 경험에 대해서 물었는데, 응답자에게 성추행은 ‘상대가 나의 뜻에 반하여 고의로 나의 가슴, 엉덩이, 성기를 건드리거나 자신의 성기를 나의 신체에 밀착시키는 행위’로, 성폭행은 ‘나의 뜻에 반하여 일어난 성행위로 강간, 강간미수, 성기에 이물질 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라고 제시하였다.

〈표 II-5〉 아동기 성추행 피해 경험 유무

(단위: 명, %)

	초교 입학 전			초등학교 다닐 때		
	있음	없음	전체	있음	없음	전체
남	79(4.3)	1779(95.7)	1858(100)	111(6.0)	1747(94)	1858(100)
여	243(13.9)	1499(86.1)	1742(100)	495(28.4)	1247(71.6)	1742(100)

자료: 이미정 외(2009) 원자료 재분석. p.32에서 인용.

〈표 II-6〉 아동기 성폭행 피해 경험 유무

(단위: 명, %)

	초교 입학 전			초등학교 다닐 때		
	있음	없음	전체	있음	없음	전체
남	18(1.0)	1840(99.0)	1858(100)	18(1.0)	1840(99.0)	1858(100)
여	42(2.4)	1700(97.6)	1742(100)	62(3.6)	1680(96.4)	1742(100)

자료: 이미정 외(2009) 원자료 재분석. p.33에서 인용.

성추행의 경우 취학전 피해 경험은 남성 4.3%, 여성 13.9%, 초등학교 재학 중 피해 경험은 남성 6%, 여성 28.4%로 나타나, 여타 자료와 비교해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미정 외, 2010). 이 자료에서 놀

7) 해당 조사는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이 구축한 조사패널을 기초로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성, 연령, 인구비에 따라 할당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남성 1,858명, 여성 1,742명이 조사에 응하였다.

라운 점은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도 성추행의 피해 경험이 상당하며, 여아의 경우는 그 비율이 자주 높다는 것이다. 청년층 여성의 경우 취학전에는 7명에 한 명꼴로, 초등학교 시기에는 3.5명에 한 명꼴로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심각한 수준의 폭력인 성폭행은 경우는 취학전 남성 1%, 여성 2.4%, 초등학교 재학 중 남성 1%, 여성 3.6%로 나타났다(이미정 외, 2010). 성추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폭행의 경우도 ‘남아’ 피해자 비율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은 공식 범죄통계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그 비율이 높은 것이다. 2008년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아동 10만명당 아동성폭력 발생은 16.9건이다. 그러나 2009년 청년층 대상 회고적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2.2%가 강간 및 강간미수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2%를 아동인구 10만명 당 비율로 환산하면 2,200명에 달한다. 청년층의 회고적 조사자료와 공식 범죄통계를 비교해 볼 때, 실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0.77%만이 사법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성폭력에 관한 2009년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취학전, 초중고 재학중 성추행과 성폭력 피해 경험의 상관관계를 검토해보았다(이미정 외, 2009). 취학전 성추행 피해 경험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재학 때의 성추행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때의 성폭행 피해 경험은 중고등학교와 고교 졸업이후의 성폭행 피해와 역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동기 때의 피해 경험이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성폭력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속한 아동 피해자 발굴과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5.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부모나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통념 중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것이다. 가해자는 정신질환자나 지저분한 노숙인, 낯선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다. 대중매체에 소개된 잔혹한 아동성폭력 사건을 보면 대부분 낯선 사람에 의해 가해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우리나라 연구를 보더라도, 가해자의 대다수는 아동이 아는 사람이다. 범죄통계에서 드러난 가해자는 낯선 사람의 비중이 더 큰데,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 고소를 꺼리는 경향 때문에 그러하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초기 연구인 2000년 강은영 연구에서도 가해자의 80.7%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19.3%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자료는 아동보호기관이나 성상담소를 통해서 수집된 것이다. 이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면, 친족이 전체 가해자 중 3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친족이 가해자란 점은 일반인들의 통념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현실이기에 이러한 점이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동네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21%로 두 번째로 많은 가해자 집단이었다. 교사가 가해자인 비중도 6.7%에 달하였다. 아동의 등하교길, 학교, 생활 반경 안에 뜻 밖에도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강은영, 2000).

2000년 강은영 연구에서 피해 아동의 연령을 취학전인 만 6세미만과 초등학교인 만7세-13세로 구분하여 가해자 유형의 차이를 검토하였는데, 집단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비율인 취학전 아동의 경우는 15.2%에 지나지 않아 초등학교 집단 20.4%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 다른 두드러진 차이는 가해자 중 친족과 이웃의 비율이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 가해자가 이웃인 경우가 27.1%이고 초등학교의 경우 15.8%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은영(2000) 연구에서 드러난 또 다른 특성은 성폭력 피해가 1-2회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비율이 44.6%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Corwin & Keeshin, 2011). 대부분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 1-2회에 그치는데 반하여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 한 비율인 전체 26.4%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아동성폭력 문제가 왜 오랫동안 사회문제로 드러나지 못했고, 최근에도 문제가 발생하여도 신고가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의 생활 반경에 있는 이웃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차이는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에 나타나는데, 취학전 아동 가해자 중 친족의 비율은 34.8%이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39.8%로, 초등학교 집단에서 친족 가해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아동과 부모가 신뢰하는 집단인 친족이나 이웃에 의한 아동성폭력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 범죄자료

성폭력 피해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가해자의 비중이 달라진다.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12-14차 자료를 보면,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60.6%이고, 아는 사람인 경우는 35.4%이다(강은영, 2010).⁸⁾ 상담자료의 경우와 달리 모르는 사람의 비중이 큰 이유는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 신고를 꺼리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에서 아는 사람 중에는 동네사람이 8.1%로 가장 비율이 높고, 그 다음이 친부로 5%, 의부 4.6%로 나타났다(강은영, 2010).

범죄자료는 신고된 것에 대해서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친족성폭력 등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신고율이 낮은 것이 예상되며,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아는 사람에 의한 가해비율이 높을 것으로 범외 전문가들도 예상한다(정연대, 2009).

8) 이 자료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유죄 판정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것이다.

〈표 11-7〉 12~14차 신상공개자 자료에 나타난 피해자·가해자 관계

(단위: 명, %)

	빈도	비율
모르는 사람	798	60.6
아는 사람	466	35.4
친부	66	5.0
의부	60	4.6
친오빠	2	0.2
친척	28	2.1
동네사람	107	8.1
친구	22	1.7
부모의 친구	38	2.9
친구의 아버지	24	1.8
기타 아는 사람	119	9.1
미상	52	4.0
계	1,316	100.0

자료: 강은영 외(2010:32). p. 23.

나. 상담기관 자료

만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 및 지적 장애인을 위한 의료, 심리,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해바라기 센터의 자료를 검토해보자. 2007-2009년 서울해바라기, 대구·경북해바라기, 광주·전남해바라기 센터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범죄통계와는 달리 가해자 중 아는 사람의 비중이 해당 기간에 각각 76%, 80.9%, 74.%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강은영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2009년 자료를 보면 가해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으로 21.4%, 친척 13.8%로 나타났다. 동네사람이 가해자인 비중은 18.4%이다. 이러한 분포는 아동보호기관과 상담소 자료를 토대로 한 2000년 강은영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가족, 친척, 이웃이 아동성폭력 가해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표 11-8〉 해바라기아동센터 자료의 피해자-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명, %)

	2007	2008	2009
모르는 사람	143(24%)	114(19.1%)	102(25.1%)
이는 사람	453(76%)	482(80.9%)	304(74.9%)
동네사람	88	74	56
가족	86	85	65
친척	63	57	42
동급생	71	71	44
선후배	33	73	25
전체	596	596	406

자료: 각 년도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보고서, 각 년도 대구·경북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보고서, 광주·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 5주년 사업보고서, 이미정 외(2010), p. 26에서 인용.

- 주. 1. ‘이는 사람’에는 동네사람, 가족, 친척, 동급생, 선후배 외에 교사, 강사, 친구의 아버지, 이성친구, 양육자 지인, 운전기사(서비스제공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2. ‘가족’에는 친부, 친모, 계부, 계모 형제가 포함됨.

6. 아동성폭력 발생의 공간적 특성

가. 아동성폭력 발생의 공간적 특성

아동성폭력은 피해아동과 가해자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동대상 성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하는데, 가해자는 피해 대상에 대한 면식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거주지 3Km 반경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정연대, 2009). 나영이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이 사는 동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가운데 범행 대상을 노렸다고 피해자 가족은 주장한다(동아일보 2010. 3. 15). 그 근거는 가해자가 피해자 집에서 400m-500m 떨어진 상가에서 9개월 간 경비일을 보았고,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다(동아일보 2010. 3. 15). 동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 대상을 노렸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아동성폭력 발생 시간은 오후 3시-4시에 집중되어 있고 사건의 74%가 학교 반경 2Km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었다(시사저널 2008. 3. 31).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볼 때 아동의 등하교길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성폭력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의 발생을 동기를 가진 가해자, 취약한 피해 대상, 그리고 상황이라는 요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 아동을 둘러싼 공간 환경도 아동성폭력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이다. 나영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등교길에 일을 당하였는데, 학교 가는 길에 지나치는 골목길로 외부의 시선에서 차단되어 있어 사고를 당하여도 주위의 구조가 쉽지 않은 위치였다(동아일보 2010. 3. 15). 공간적 차원에서 아동 등하교길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나. 아동안전지도의 예방효과

범죄자료를나 대중매체에 소개된 범죄사건을 분석해보면, 아동 안전과 관련된 문제 대다수는 아동의 생활 반경인 초등학교 등교 길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이 등하교길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성폭력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아동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아동의 인식이다. 안전이나 위험에 대한 개념을 학습한 아동은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환경을 선택하는 생활방식을 습득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주변 환경 안전을 개선하는 방식인 안전지도 제작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안전지도는 범죄예방 방식의 하나로 일본에서 개발되었는데, 초점을 ‘범죄자’에게 맞추기 보다는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많은 장소’에 맞추고 있다(이미정 외, 2010).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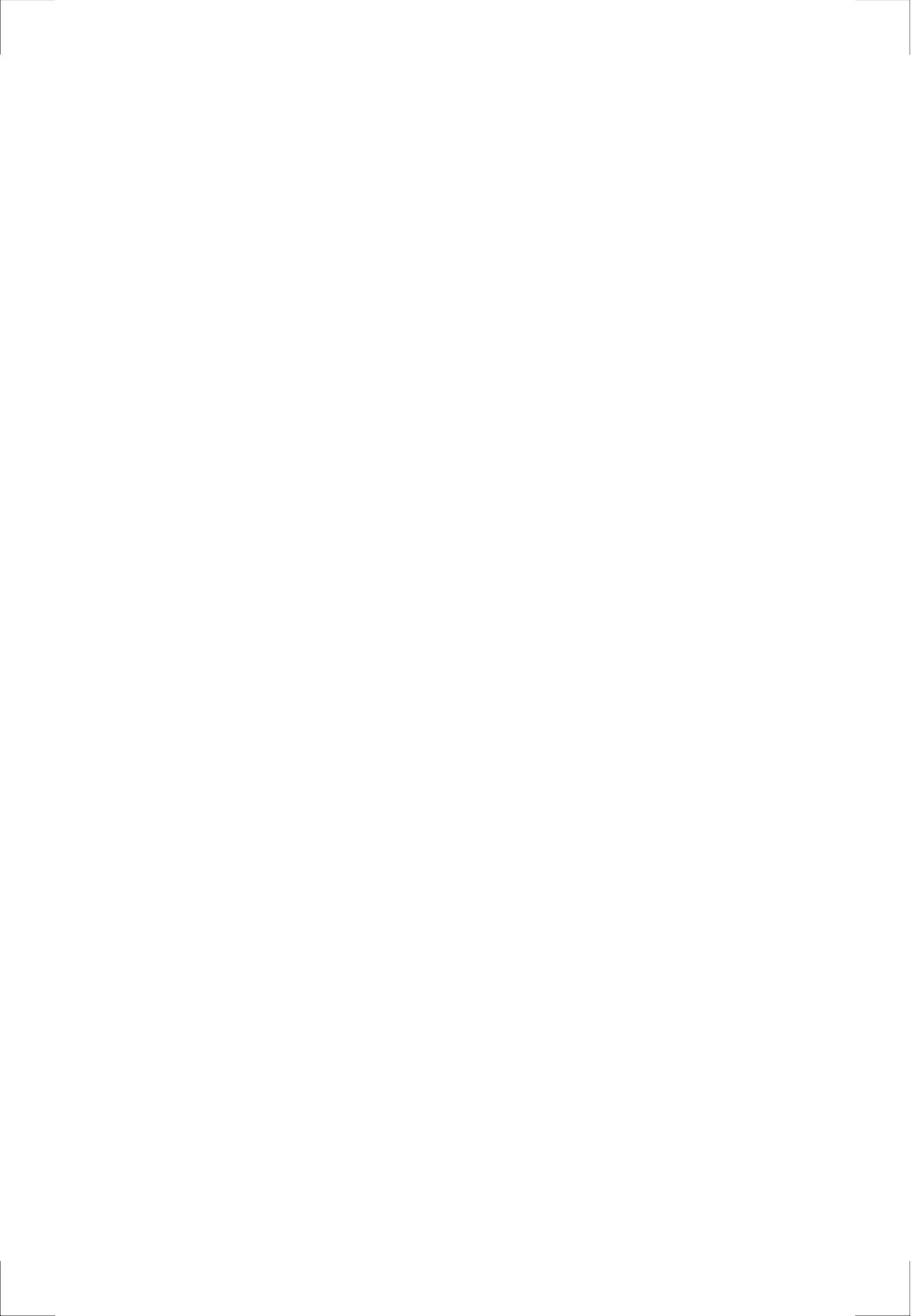
9) 안전지도 제작에 대한 내용은 2010년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방안

안전지도 제작의 전제는 잠재적 범죄지는 범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범죄 발생에는 동기부여된 범죄자, 취약한 피해자, 범죄 발생이 용이한 장소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범죄기회가 많은 곳에서는 범죄가가 발각될 위험이 적지만, 범죄기회가 적은 곳에서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 않는 것이다.

안전지도의 제작 목표는 범죄기회가 높은 위험 공간을 개선하고, 범죄 피해자가 될 사람을 교육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범죄 취약 공간을 발견하고, 지도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범죄 위험이 높은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고 경계심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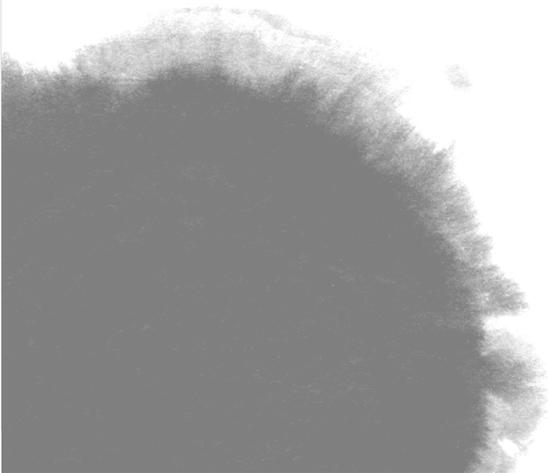
과천시내 4개 초등학교 재학생이 참여하여 제작한 등하교길 안전지도 제작에 참여한 270여명 아동 대상으로 검토한 효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정 외, 2010). 안전지도 제작 참여를 통해서 다수의 아동이 통학로 상에서 위험 공간을 인지하게 되었고,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다. 또 지도제작 참여를 통해서 학교 인근, 위험 공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어떠한 공간을 피해서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안전지도 제작 참여 초등학생들은 범죄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고, 범죄대처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요약하면, 안전지도 제작은 범죄 위험에 대해 아동에게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교육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II) 연구에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은 공동연구자인 이경훈 교수가 집필한 것이다.



03

이동성폭력 관련 정책적 대응





111. 아동성폭력 관련 정책적 대응

1. 아동성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가.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동대상 성범죄의 발생으로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에 부응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08년 범정부 회의체인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 점검단’을 구성하여 종합대책 수립하려고 하였다.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 점검단에 참여하는 정부기관은 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다.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은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이미정 외, 2010).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통해 아동·여성 대상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아동안전지킴이 집 및 안전지킴이 운영 점검을 통해 지역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놀이터, 공원, 학교 등 아동이 빈번하게 활동하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노인이나 경찰 은퇴자에게 ‘아동안전지킴이’ 역할을 부여하여 이들이 아동 등하교길이나 놀이터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2009년에는 총리실 주관으로 ‘아동성폭력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는데,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의료지원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총리

실, 법무부, 지자체, 병원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예방, 보호, 단속 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이 확인되었다(이미정외, 2010).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참여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다양한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 아동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봉사단체, 노인단체, 여성단체의 참여가 요구되었다. 요약하면,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관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나. 다양한 지킴이 제도 운용

1)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 성폭력 위험이 등하교 길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장소나 사람을 구성하고 배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아동의 안전을 지켜 주기 위한 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있는데, 경찰청 관리하에 있다. 경찰의 순찰활동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통해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이미정 외, 2010).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의 약국 및 상점들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으로 이들의 주요 역할은 아동 임시보호와 경찰연계이다. 경찰청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역할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지만, 설립 초기 초등학교 1년생 대상 인지도 조사결과는 10.8%로 낮게 나타났다. 경찰청은 고정된 지킴이집 이외 움직이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확대하여, 야쿠르트 배달원, 모범택시기사, 집배원, 태권도사범 등에게 지킴이 역할을 맡겼다.

2)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집’에 추가하여 지킴이 역할을 하는 인력을 ‘아동안전지

킴이'라는 명칭으로 구성하였다.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은 2009년 보건복지부, 경찰청, 대한노인회, 대한경우회 4자 협약으로 시작되었다. 퇴직경찰 모임인 경우회 회원과 노인회 회원이 아동안전지킴이로 위촉되는데, 지원자 중 봉사정신, 직무능력,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을 고려하여 선발한다.¹⁰⁾ 아동안전지킴이는 경우회 회원 1인과 노인회 회원 1인이 1조를 구성하여, 아동의 하교시간인 오후 2시-6시 일주일 4시간 씩, 주 5회 활동하고 있다. 매달 30만원 활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들에게 조끼, 모자, 배지 복장을 경찰청에서 일괄 지급하다. 이들은 초등학교 통학로, 방법이 취약한 공원, 아동대상 범죄 취약지역 중심 순찰하여 아동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련하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 수립, 예산지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경찰청은 사업계획 수립, 아동안전지킴이 교육·감독 및 활동실적 등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의 충원과 위촉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3) 배움터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외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배움터지킴이’가 있는데, 퇴직경찰관, 퇴직교원,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에 학교내외 순찰, 학교폭력 가해자 선도, 피해자 보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배움터지킴이는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규정되는데 오전 8시-오후4시가 활동시간대이며 일일 3만원의 사례가 제공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배움터지킴이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0) 노인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노인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2. 가해자 처벌 강화

가. 신상공개제도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에 부응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다(이미정 외, 2010).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나 법원에 의해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 청소년 성매수의 죄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이다. 법원은 관련 범죄로 유죄판정을 선고할 경우, 등록대상자이며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등록대상자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지한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이미정 외, 2010). 신상정보를 전달받은 경찰관서나 교정시설의 장은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고, 장관은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정보를 등록한다. 2009년 조두순 사건 발생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확대되었는데, 2010년 관련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세 이상 성인이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전자감독 제도

전자감독제도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위치 확인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추적하여, 해당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나라에는 200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9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이미정 외, 2010). 전자감독제도의 정책적 효과로는 재발방지 대책 도입으로 국민 불안감 감소,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24시간 감독을 통해 범주기

회 사전차단, 특정 범죄자의 위치정보를 수사 및 재판에 활용하여, 관련 수사 및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이미정 외, 2010).

전자감독제도가 범죄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되지만(김혜정, 2005),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472명 중 1명만이 성폭력을 재범하여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이미정 외, 2010).

다.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의 부족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은 단호하지만, 교정시설 내 가해자 치료교정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 대상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 운영은 초기 단계에 있는데, 2009년 인천, 용인, 춘천, 대전, 전주, 여수, 부산, 마산 지역 성폭력상담소에서 해당 지역 보호관찰소 및 교도소와 협력하여 성폭력범죄자 재발방지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이미정 외, 2010).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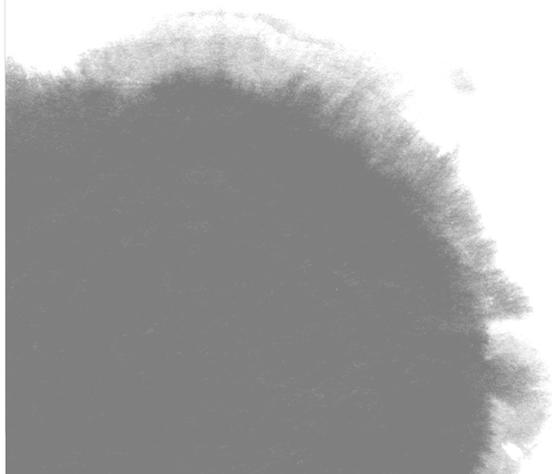
라. 가해자 처벌강화의 한계

우리나라에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외국과 비교하여 엄격한 편인데, 발생사건의 10% 이하만 신고되고,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고, 또 이 중 일부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나기 때문에 처벌 강화만으로 아동성폭력에 대처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김한균·강은영, 2006; 표창원, 2009). 공식 범죄통계에 근거하면 168건 중 1건이 신고되고, 373건 중 1건이 기소되고, 451건 중 1건만이 유죄판결을 받고 있어, 처벌 강화 정책만으로는 아동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많다(강은영 외, 2010).



04

외국에서의 이동 성동격 논의





Ⅳ. 외국에서의 아동성폭력 논의

1. 아동성폭력 이슈의 등장

다른 어느 나라보다 미국에서 아동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는데, 1970년대 말부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Finkelhor, 1984).¹¹⁾ 미국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대중과 전문가들의 관심은 1960년대 시작되었다. 인권이나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회사업, 의학, 간호, 정신과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동성학대를 대중적 이슈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다(Corwin & Keeshin, 2011). 1970년대 중반 아동성학대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보고가 의무가 되었고, 이후 아동성학대의 특성 및 유형 그리고 광범위한 발생에 대한 저작물들이 발간되고 1980년 아동성학대는 대중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대중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전문가 가이드라인, 성학대를 보여주는 증거물에 대한 지식, 피해 아동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Corwin & Keeshin, 2011). 사회복지사나 아동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검찰이나 법원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다루었다.

11) 외국사례를 다루는 본 장에서는 미국과 홍콩의 사례를 논의할 것이다. 미국은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문제가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 먼저 공론화되었고, 관련 이슈와 대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사례에 해당된다. 홍콩은 유교문화권의 국가이면서도 아동성폭력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인 국가에 해당된다. 어느 사회에서나 아동성폭력 중 가족 및 친척이 가해자인 비중이 높는데 이 문제를 드러내고 대응하는 방식은 전통적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와 같은 유교문화권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2. 아동성폭력 피해 발골의 어려움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을 보면, 이들은 상당한 정도의 무기력감을 느끼는데, 성폭력을 당할 때 대부분의 경우 소리 지르거나 저항하지 않고 잠든 척하거나, 숨거나, 그러한 경험을 분리해서 생각한다(Corwin & Keeshin, 2011). 아동성학대가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는 드물고, 비밀성과 무기력감으로 피해의 뒷에 걸린다. 피해아동 다수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자신 만의 비밀로 간직하며 부모나 어른에게 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nkelhor, 1979).

피해자들의 이러한 성향은 관련 통계에 영향을 미쳐, 아동성폭력 발생률이 낮게 나타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기 피해 경험에 대한 회고적 연구에서는 아동성폭력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피해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당사자 아동이 밝히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부모나 여타 어른이 관련 징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Browning & Boatman, 1977).

아동이 성학대 피해를 드러내는 것은 대부분 일이 발생한 이후 한참 후인데, 혼란스러움 속에서 여러 번의 피해 사건을 기술하느라 몸부림치게 된다. 아동이 밝혔을 때 가족들이 믿지 않기도 하고, 가해자는 아동을 버리거나 비난하거나, 가족이 해체되기도 한다(Corwin & Keeshin, 2011).

3. 성폭력 피해 아동 관련 특성

가.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성폭력 피해자는 성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배우고, 성적 활동은 부적절한 감정이나 기억과 연관시킨다. 그 결과 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던가, 성과 사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다. 성적행동을 많이 표출하기도 하고, 발달단계상 맞지 않는 애정표현을 하기도 한다(Corwin & Keeshin, 2011). 가해자가 가족구성원이던 아니던, 피해 아동은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보호자였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면서 배신감을 느낀다(Corwin & Keeshin, 2011).

아동성폭력 피해 징후로 발견된 것을 살펴보자. 근친상간 피해자의 경우 피해 증후로 브렌너(Brenner)는 다음의 다섯 행동 특성이 제시된다(Brenner, 1984). 전에 없던 두려움의 표출, 일상적 행동양식의 변화, 성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 학교 성적의 변화, 부모와의 관계 악화.

또 다른 전문가들은 아동기 성폭력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섭식 장애, 수면 장애, 배설 장애, 학교에서 학습 및 행동 문제, 과도한 두려움, 죄책감, 우울증,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성적인 것(Sexuality에 대한 집착, 신체 증상 호소, 자살 경향을 제시하고 있다(Miller-Perrin & Wurtele, 1988).

나. 피해아동의 가족 특성

아동성폭력 연구의 대가인 핀켈호(Finkelhor) 1984년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성폭력 피해 아동의 가정환경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자(Finkelhor, 1984). 가족 특성으로는 가계수입 1만달러 이하, 농촌거주,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 부모 부부간 애정표현 부재가, 아버지 특성으로는 아버지의 비동거, 양부와 동거, 자녀에 대한 애정이 거의 없음, 보수적인 가족 가치가, 어머니의 특성으로는 어머니 비동거, 양모와 동거, 자녀와의 관계 소원, 고졸

미만 학력, 자주 이혼, 자녀에 대한 애정이 거의 없음이 제시되었다.

아동성폭력이 발생하는 조건 중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아동자신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자(Finkelhor, 1984). 아동의 가족과 관련된 환경으로는 어머니가 부재하거나 있어도 아픈 경우, 모자관계가 소원하거나 자녀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학대당하는 경우, 사회로부터 격리된 가족, 아동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 침실상황이 특이한 경우가 지적되고 있다. 아동과 관련된 특성으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박탈감을 가진 아동, 성폭력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아동, 가해자와 특별한 신뢰가 형성된 경우가 제시되고 있다.

다. 가해자의 특성

미국연구에 의하면 아동성추행자들은 아동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Loss & Glancy, 1983). 이들 중 성인 여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내성적이고, 미숙하고, 사회성이 부족하여 성인여성과의 관계를 성적 관계로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느낀다(Langevin, 1983). 또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성추행 및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는데, 교사, 부모, 이웃이 가해자인 경우 본능적으로 아동에게 성적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성폭력을 하게 된다(Finkelhor, 1984).

4.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

가.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폭력 발생과 관련된 특성을 위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동을 대상으로 신변의 안전을 보호 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자기 보호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 정신과 치료 및 상담 받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아동성학대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성학대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미국에서는 공중보건의 문제로 접근한다. 예방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아동성폭력 발생과 관련된 요인들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예방이다.

공중보건모델(Public Health Model)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환경 간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1차적 예방을 강조하는데, 부모, 아동, 학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아동성학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부분 예방프로그램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주 드물다(Wurtele & Kenny, 2010).

미국에서는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이 1970년대 말에 개발되었고 1980년대 초중반에 확산되었다. 대개의 경우 학교에서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아동에게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 가를 가르쳤다(Wurtele & Kenny, 2010). 1980년에 미연방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아동대상 책, 영화, 연극, 교육 자료가 등장하였다. 1990년 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85% 미국 학군에서 아동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Wurtele & Kenny, 2010).

나. 아동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에게 초점을 맞춘 안전 프로그램은 잠재적 가해자 및 가해상황을 인식하도록 돕고, 학대가 예상되는 접근에 “아니다”라고 말하여 잠재적 가해

자에게 저항하고 피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성학대 사실에 대해서 신뢰할만한 사람에게 말하도록 가르친다(Wurtele, 2008). 학교 프로그램에서 강조되는 것은 3Rs인데(Recognize, Resist, Report), 깨닫고, 저항하고, 알리라는 것이다.

아동기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후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을 때, 당시 가해자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이 있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Miller-Perrin & Wurtele, 1988). 피해 상황에 직면한 아동이 저항하거나 울면 가해자는 가해 시도를 중단하고, 수동적인 아동을 찾는다(Sanford, 1980).

아동이 성폭력을 피하거나 저항하는 능력이 있는가 여부가 피해 여부의 중요한 요인인데,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성폭력 피해에 취약하다. 아동이 이러한 상황을 피하거나 저항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예방책에 포함되어야 한다(Miller-Perrin & Wurtele, 1988).

학교 교육 체계를 통한 예방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미국에서 취학전 유치원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예방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Miller-Perrin & Wurtele, 1988). 첫째, 아동에게 신체에 대한 주인의식을 심어주는데, 자신에 신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둘째,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을 때 싫다고 단호하게 말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친다. 셋째, 가해 우려가 있는 대상으로부터 도망친다고 가르친다. 넷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자의 범위에 대해서 가르친다.

다. 부모대상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아동성폭력 예방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모가 예방 강사로 훈련이 된다면, 이들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게 된다.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대화를 부모가 자녀와 나누면서 아동 성폭력과 관

련된 비밀스러운 면을 줄일 수 있다. 성폭력 예방 지식을 부모를 통해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정에서 말하는 금기를 깰 수 있다(Miller-Perrin & Wurtele, 1988).

부모가 취학전 아동과 자연스럽게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유아기 및 아동기의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Wurtele & Kenny, 2010). 아동성폭력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부모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 위험에 대해서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 필요 이상으로 큰 두려움을 준다는 점이다(Finkelhor, 1984). 부모들은 성에 대해서 자녀와 이야기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며, 아동 성폭력의 한 형태인 근친상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녀와 대화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제이다.

자녀가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대처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점검할 수 있다. 이들 대상 예방 프로그램은 피해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피해의 반복적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있다(Miller-Perrin & Wurtele, 1988). 자녀를 교육할 입장에 있는 부모는 통념에 사로잡혀 자녀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 부모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 통념은 아동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게 의해서 일어나고, 여아만이 가해의 대상이며, 가해자는 폭력적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Finkelhor, 1984).

자녀가 성폭력 당할 위험이 적거나 이러한 주제를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지지도가 낮다. 미국에서 아동성폭력 발생율이나 가해자에 대한 부모들의 두려움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자녀와 의논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Wurtele & Kenny, 2010). 게다가 부모들은 부정확한 정보를 주기도 하는데, 가해자들은 사회적 부적응자, 더러운 노인, 낯선 사람이라고 자녀들에게 알려준다. 가족구성원,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 신뢰 받고, 권위 있는 사람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부모들은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를 식별하는 법, 이들이 부모와 아동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구사하는 책략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Wurtele & Kenny, 2010). 베이비시터 후보, 아동이 놀러 다니는 집,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안전과 관

련된 훈련을 부모에게 제공한다. 부모 차원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해자와 자녀가 만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다(Wurtele & Kenny, 2010).

예방교육을 위해서 부모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자녀를 통해서 성폭력 예방 관련 자료를 집으로 보내기도 하고, 학교의 프로그램에 부모를 초대할 수도 있다. 부모의 프로그램 참여가 쉽지 않은데, 미디어, 인터넷, 종교기관, 도서관 등을 통해서 부모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Wurtele & Kenny, 2010).

5. 아동성폭력에 대한 홍콩의 대응

중국 문화권에 있는 홍콩에서 아동학대 이슈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살펴보자. 홍콩에서는 아동학대는 서구국가에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Ip, 2010). 1981년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및 관리를 위해서 아동성폭력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이후 1990년, 2007년 가이드라인이 수정되고 사회복지국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다. 관련 정보가 포함하는 내용은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 정보, 전문분야의 역할, 연계 및 대응 절차, 아동보호와 관련된 비밀유지 문제, 상담 및 추천을 위한 전문가 및 담당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홍콩에서 아동보호등록부(Child Protection Registry)에 등록된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는 1990년 이전에는 전체 아동학대 건수의 2% 정도에 그쳤으나,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1996년 30%-4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Ip, 2010). 2008년 피해아동 자료를 보았을 때, 가해자의 62.7%는 피해 아동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율은 실제 발생률보다 낮는데, 아동의 성적학대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알리고자 하는 아동의 의지, 이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적절한 반응, 아동기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Ip, 2010). 홍콩의 한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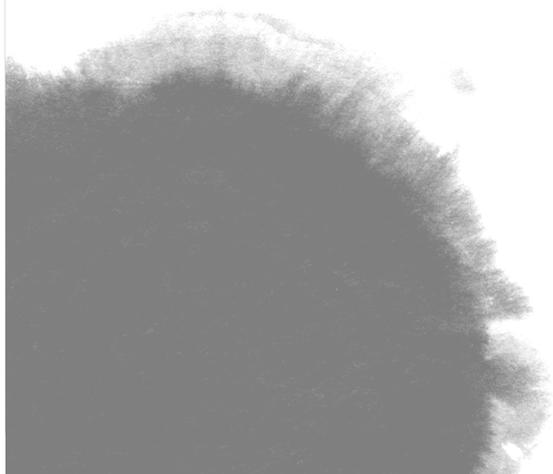
구에 의하면 대학생 6%과 17세 이전 성적 학대를 당했으며, 이중 39%만이 타인에게 학대 사실을 알렸는데, 이중 56%에 대해서는 후속 대응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Tang, 2002).

아동학대방지회(ACA, Against Child Abuse)는 1991년 성적학대 예방법을 아동에게 교육하는 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이 매뉴얼에는 아동의 성적 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법, 아동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는 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부단체인 카리타스(Caritas)와 협력하여 ACA는 아동성학대 대응과 관련하여 부모/자녀 교육을 담당하는 훈련자 과정을 개발했다. 1998년 훈련자 지도를 위한 매뉴얼이 만들어졌고, 2001년 이들의 교육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완성되었는데,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또 다른 비정부단체인 아동성학대근절을 위한 재단(End Child Sexual Abuse Foundation)도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데,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이 특별히 제작한 버스로 학교투어를 하며 교육을 하고 있다(Ip, 2010).



05

성폭력 피해 이동의 특성





V.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성

1. 아동성폭력 피해 발생

가. 아동성폭력 피해 발생율

성폭력(sexual violence)은 강간, 성폭행, 성적희롱을 포함한 범죄를 지칭한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피해자의 연령, 장애, 약물중독 상태로 인하여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행되거나 시도되거나 위협된 물리적 강제력, 흥기 또는 무기의 사용, 강요, 협박을 통한 성적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성적행위에는 강간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피해자의 성기, 항문, 신체의 일부접촉, 관음증, 노출증, 음란물노출이 포함된다(Russell & Bolen, 2000).

<표 V-1>는 키스, 포옹, 가슴만지기, 성기만지기, 성기보여주기, 강제로 성기를 만지게 하기의 총 6가지 유형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누군가에게 강제로 키스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전체 4693명 중 0.92%에 해당되는 43명이었다. 누군가에게 강제로 포옹당한 적이 있는 피해아동은 93명으로 전체 설문아동 중 1.99%를 차지하였고 누군가가 강제로 가슴을 만졌던 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전체 아동의 0.81%에 해당되는 38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V-1〉 성폭력피해를 당한 아동의 분포

성폭력 피해유형	있다	없다	전체
강제로 키스했다	43 (0.92%)	4,640 (99.08%)	4,683 (100.0%)
강제로 포옹했다	93 (1.99%)	4,592 (98.01%)	4,685 (100.0%)
원하지 않는데 가슴을 만졌다	38 (0.81%)	4,646 (99.19%)	4,684 (100.0%)
원하지 않는데 성기를 만졌다	123 (2.63%)	4,559 (97.37%)	4,682 (100.0%)
원하지 않는데 자기 성기를 보여주었다	76 (1.62%)	4,608 (98.38%)	4,684 (100.0%)
원하지 않는데 자기 성기를 만져달라고 했다	23 (0.49%)	4,658 (99.51%)	4,681 (100.0%)

한편, 누군가가 강제로 성기를 만졌던 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123명으로 전체 아동 중 2.63%를 차지하였고 누군가가 강제로 내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던 경험은 76명(1.62%), 누군가가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질 것을 강요한 경험은 23명(0.49%)에 각각 해당되었다. 이 중 조사아동으로부터 가장 많은 피해율을 보이고 있는 성폭력 유형은 누군가가 강제로 성기를 만졌던 경험(2.63%)였고 그 다음은 누군가에게 강제로 포옹당한 경험(1.99%), 누군가가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경험(1.62%) 순이었다.

나. 아동성폭력 가해자, 피해시간, 피해장소

<표 V-2>에서 <표 V-4>은 이러한 성폭력 피해의 경험을 좀 더 구체화하여 가해자의 유형, 피해를 경험한 시간대, 피해를 경험한 장소를 집계한 내용이다. 제시된 표와 분석은 동종의 데이터를 이용한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방안(Ⅱ): 여아가 안전한 지역사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에서 재인용하였다. <표 V-2>는 성폭력을 가해한 대상이 누구였는지 나타내고 있으며 강제적 키스의 피해에서는 친구가 16건으로 가해자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또한 총 35건의 응답자 중 6건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인이 아닌 불특정 외부인

에 의한 피해 사례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제로 포옹당했던 피해유형 역시 친구로부터의 가해가 16건으로 가장 높았고 낮선 사람에게서 가해가 발생한 경우도 15건이나 되었다. 원하지 않는데 가슴을 만진 사례 또한 친구에 의한 피해가 9건을 기록했고, 전혀 모르는 낮선 사람에게서 피해 입은 사례도 6건으로 전체 22명의 응답자 중 약 3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원하지 않는데 성기를 만진 사례는 동료 친구집단에서 가해된 사례가 전체 85건 중 6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낮선 사람으로부터 피해 입은 사례는 6건으로 나타났다.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사례에서는 친구로부터의 가해가 20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가해가 19건으로 나타났다.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기를 만질 것을 요구받은 경험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 피해가 전체 15건 중 8건을 차지함으로써 피해아동 중 과반수 이상이 이에 해당되었다. 종합해보면, 대체로 많은 수의 성폭력 가해는 동료 친구집단으로부터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안면이 없는 낮선 외부인으로부터의 피해 경험 역시 무시 못 할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V-2〉 성폭력 피해의 구체적 사례: 가해자

성폭력 가해자	낮선 사람	사귀는 이성친구	선생님	이웃 선배	친척	가족	동네 어른	친구	합계
강제로 키스했다	6	5	0	3	1	4	0	16	35
강제로 포옹했다	15	6	2	5	5	11	2	16	62
원하지 않는데 가슴을 만졌다	6	0	1	1	3	1	1	9	22
원하지 않는데 성기를 만졌다	6	1	2	2	4	1	1	68	85
원하지 않는데 자기 성기를 보여주었다	19	1	0	4	4	1	0	20	49
원하지 않는데 자기 성기를 만져달라고 했다	8	0	0	0	2	1	0	4	15

자료: 자료: 이미정 외 (2010),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방안(II)」, p. 161 <표 IV-12> 인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표 V-3〉 성폭력 피해의 구체적 사례: 피해시간대

성폭력 피해시간대	9시-12시	12시-14시	14시-17시	17시-20시	20시-24시	24시-9시	합계
강제로 키스했다	5	13	10	3	4	1	36
강제로 포옹했다	16	15	14	10	11	1	67
원하지 않는데 가슴을 만졌다	10	2	5	4	2	2	25
원하지 않는데 성기를 만졌다	39	26	12	7	1	2	87
원하지 않는데 자기 성기를 보여주었다	18	13	9	3	6	0	49
원하지 않는데 자기 성기를 만져달라고 했다	2	5	3	4	1	0	15

자료: 이미정 외 (2010),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방안(Ⅱ)」, p. 161
 <표 IV-12> 인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표 V-3>은 이러한 성폭력 피해가 발생된 시간대의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강제로 키스당한 경험은 주로 오후2시에서 5시 사이의 낮 시간대가 전체 36건 중 23건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범죄피해율을 나타내었다. 강제로 포옹당한 경험은 대체로 시간대가 고르게 분포한 가운데 역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낮 기간 동안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원하지 않는데 가슴을 만진 피해사례는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의 시간대에서 총 10건으로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원하지 않는데 성기를 만진 경험 역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의 낮 시간대에 주로 분포하였다. 또한 원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사례와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강요받은 피해경험 사례도 이와 비슷하게 주로 낮 시간대의 피해 분포를 보였다.

<표 V-4>은 성폭력의 피해장소들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강제로 키스를 당한 피해는 학교가 전체 31건 중 10건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이 7건으로 피해자의 집이었다. 강제로 포옹당한 피해 역시 전체 59건 중 19건인 학교와 16건인 피해자의 집 순이었다. 원하지 않았는데 가슴을 만진 사례도 총 21건 중 11건이 학교로 나타났다. 원하지 않는데 성기를 만졌던 피해사례 역시 전체 89건 중 압도적으로 많은 68건이 학교에서 발생하였다.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피

해를 경험한 사례 또한 전체 42건 중 21건이 학교에서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강요당한 경험은 총 13건 중 4건이 등하교길, 3건이 각각 학교와 피해자 집에서 발생했다. 종합해보면, 주로 피해발생이 집중되는 장소는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 성폭력 피해의 구체적 사례: 피해시간대

성폭력 피해장소	학교	등하교길	놀이터	PC방	상권·유흥가	학원	지하철역부근	친구집	피해자 집	가해자 집	합계
강제로 키스했다	10	5	4	0	1	3	1	0	7	0	31
강제로 포옹했다	19	9	6	1	2	5	1	0	16	0	59
원하지 않는데 가슴을 만졌다	11	1	1	0	0	2	0	0	5	1	21
원하지 않는데 성기를 만졌다	68	2	4	1	0	6	1	1	5	1	89
원하지 않는데 자기 성기를 보여주었다	21	10	3	1	0	1	0	1	5	0	42
원하지 않는데 자기 성기를 만져달라고 했다	3	4	1	1	0	0	0	0	3	1	13

자료: 이미정 외 (2010),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방안(Ⅱ)」, pp. 161-162
 <표 IV-12> 인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성폭력 피해아동의 특성

가. 아동성폭력 피해 유무별 분포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성인피해자에 비해, 아동피해자의 정신적 취약성으로 인해 범죄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고,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범죄피해결과가 더 크다. 나아가 가족과 지역공동체, 사회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더욱 크다(여성정책연구원, 2010). 아동기 성학대 경험은 성인기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결혼, 가족 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 만성 우울증, 낮은 자존감, 자기 파괴적인 행동 양식, 성적 불능,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성학대 반복이 나타난다(Miller-Perrin & Wurtele, 1988: p.314).

하단부터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여부를 기준으로 조사아동들의 집단을 나누고, 이 두 집단 간의 일반적인 인구학적 특성과 개인심리적 특징, 가정환경적 특징, 거주지역적 특징, 위험대응 및 안전인식 등 다양한 변인에서의 차이를 제시한다.

〈표 V-5〉 아동성폭력 피해유무별 분포

일반특성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성별	남아	187 (71.37%)	2,083 (48.02%)	2,330 (50.65%)
	여아	75 (28.63%)	2,255 (51.98%)	2,330 (50.65%)
연령	10세	4 (1.53%)	108 (2.49%)	112 (2.44%)
	11세	51 (19.54%)	1,163 (26.81%)	1,214 (26.40%)
	12세	106 (40.61%)	1,734 (39.97%)	1,840 (40.01%)
	13세	98 (37.55%)	1,324 (30.52%)	1,422 (30.92%)
	14세	2 (0.77%)	9 (0.21%)	11 (0.24%)
전체		270 (5.76%)	4,415 (94.24%)	4,685 (100.0%)

<표 V-5>는 앞서서 제시된 총 6가지 유형의 성폭력 피해(키스, 포옹, 가슴만지기, 성기만지기, 성기보여주기, 성기만지기의 강요) 중 단 한가지의 유형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피해아동들과 한 가지도 경험한 적이 없는 비피해아동의 집단을 나누어 그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6가지 성폭력 유형 중 한 가지 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피해아동은 270명으로 전체 4685명 중 5.76%에 해당된다. 성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적 없는 비피해아동은 4415명으로 92.24%를 차지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아동과 비피해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아동의 성비구성은 남아가 187명(71.37%), 여아가 75명(28.63%)에 해당되었다. 비피해아동은 남아가 2083명(48.02%), 여아가 2255명(51.98%)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아동은 대체로 남아의 비율이 70% 정도로 세배 이상 높았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피해아동은 전체 피해아동 중 약 20%가 10-11세로 상당히 낮은 연령대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2세는 40.61%, 13세는 37.55%를 나타내면서 대체로 피해아동 중 압도적인 비율이 13-14세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4세 아동은 0.77%에 해당되었다. 비피해아동의 연령분포와 특징을 비교해본다면 피해아동은 대체로 12-13세일 경우의 비율이 비피해아동보다 더 높았고 비피해아동은 피해아동에 비해 10-11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따라서 아동의 성폭력 피해경험이나 성폭력 피해의 인식은 주로 12세 이상의 아동집단으로부터 빈번해진다고 할 수 있겠다.

나. 성폭력 피해아동의 가정여건

〈표 V-6〉 성폭력피해아동의 가정여건

가정환경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부모 동거	양친	238 (89.81%)	3,958 (90.76%)	4,196 (90.70%)
	아버지만	9 (3.40%)	136 (3.12%)	145 (3.13%)
	어머니만	17 (6.42%)	204 (4.68%)	221 (4.78%)
	둘 다 없음	1 (0.38%)	63 (1.44%)	64 (1.38%)
가계경제수준(1): 주관적 경제수준	평균이상	37 (13.91%)	703 (16.16%)	740 (16.03%)
	평균이하	229 (86.09%)	3,648 (83.84%)	3,877 (83.97%)

자료:

<표 V-6>는 성폭력 피해아동의 가정여건적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살펴보면 피해아동은 양친 모두와 동거할 경우가 89.81%로 나타나 비피해아동의 90.76%보다 1%정도 더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만 동거할 경우는 피해아동이 3.40%로 비피해아동의 3.12%보다 미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만 동거할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6.42%로 비피해아동의 4.68%보다 구성비율이 약 2% 정도의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아동은 비피해아동에 비해 한부모 가정에서 동거하고 있을 경우가 높은 가운데 특히 어머니일 경우가 좀 더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냈다²⁾.

가계의 경제적 수준(1)은 아동에게 스스로의 가계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

12) 부모동거에 대한 성폭력 피해아동과 비피해아동 사이의 비율은 1~2%이내의 미미한 범위 내에서 차이를 노정시켰으나 본 연구는 유의한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이라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아동성폭력 피해는 폭력의 특성상 빈번하게 경험되기 보다는 전체 아동 중 희소한 사례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본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아동의 5.76%). 따라서 이러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수집된 피해아동으로부터 나타난 집단간 구성비의 차이는 미미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도 수준이라 생각하는지 계층소속감을 주관적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아동 중 자신의 가정이 평균이상의 경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인식하는 아동은 13.91%였고 이는 비피해아동의 16.16%보다 약 2%정도 낮은 수치였다. 반면, 자신의 가계경제를 평균이하라고 인식한 아동은 피해아동이 86.09%, 비피해아동이 83.84%로 피해아동의 비중이 더 높았다. 따라서 가계경제수준에 있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은 피해아동 집단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7〉 성폭력피해아동의 가정여건(t-test)

가정여건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부모동거 여부	0.10 (0.30) N=265	0.09 (0.28) N=4361	0.09 (0.29) N=4626
	T=0.515		
가계경제수준(1): 주관적 경제수준	2.91 (0.66) N=266	3.01 (0.58) N=4351	3.00 (0.58) N=4617
	T=-2.656**		

자료:

1. 평균, 표준편차, 관찰치 순
2. 부모동거여부: 2점 척도, 부모 모두와 동거(0)~부모 중 한분이상이 부재 중(1)
3. 주관적 경제수준: 4점 척도, 우리집은 전혀 잘 살지 않는다(1)~우리집은 매우 잘 산다(4)
4. *p<.05, **p<.01, ***p<.001

〈표 V-7〉는 앞서 제시한 가정여건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부모동거 유형과 가계경제수준에 대한 T-test 검정을 나타낸 것이다. 부모동거여부는 부모 양측과 모두 함께 동거하는 아동(0)들과 부모 중 어느 한 쪽이라도 함께 동거하지 않는 아동(1)의 집단을 나누어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는 성폭력 피해아동 중 한부모 가정 혹은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의 사례수가 미미한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관적 경제수준의 경우 응답아동에게 자신의 가정이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지 주관적으로 기입하게 하였으며 총 4점 척도로 값이 높을수록 아동

이 가계경제적 지위를 높게 평가도록 고안되어졌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 아동은 평균적으로 2.91점을 응답한데 반해 피해를 입은 적이 없는 아동은 3.01점을 나타내면서 피해아동의 경우 일반아동에 비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적 특징

〈표 V-8〉 심리적 특성 문항

심리적 특징	문항
대인관계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게 즐겁다(역코딩)
	나는 왕따를 당하는 편이다
우울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기분이 자주 우울하다
폭력성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내동댕이친다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4): 4점척도

자료:

<표 V-8>는 응답아동들의 심리적 특징으로 대인관계, 우울도, 폭력성을 나타낸 문항이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이며 동종 범주의 문항들은 합산한 후 단일지표로 평균화하였고 일부 문항은 용도에 맞게 역코딩되어있다. 모든 지표는 그 값이 높을수록 응답아동의 심리상태가 부정적인 특성을 나타내도록 고안되었다.

〈표 V-9〉 성폭력피해아동의 심리적 특성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대인관계	1.44 (.56) N=268	1.34 (0.47) N=4400	1.35 (0.48) N=4668
	T=3.151**		
우울도	1.71 (0.75) N=268	1.50 (0.63) N=4402	1.51 (0.64) N=4670
	T=5.258***		
공격성	1.61 (0.69) N=267	1.36 (0.54) N=4396	1.37 (0.55) N=4663
	T=7.368***		

자료:

- 주. 1. 평균, 표준편차, 관찰치 순
2.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4)
3.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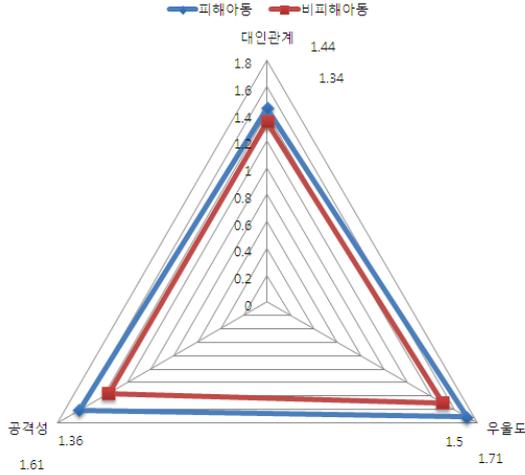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적 특징을 살펴보면 <표 V-9>과 같다. 먼저, 대인관계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은 평균 1.44점을 나타내면서 비피해아동의 평균 1.34점 보다 높았고 이는 피해아동이 비피해아동에 비해 교우관계나 대인관계에 있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우울도에서는 피해아동이 1.71점으로 비피해아동의 1.50점보다 높게 나타나 대체로 피해아동은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우울도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격성에서도 피해아동이 1.61점으로 비피해아동의 1.36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면서 피해아동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대인관계, 우울도, 공격성의 모든 심리적 지표에서 피해아동은 비피해아동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 부정적인 상태를 나타내었고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경험은 아동의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사건의 선후관계가 모호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폭력 피해경험이 아동의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점, 우울도, 공격성을 나타내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이러한 부정적 심리상태가 아동을 폭력

으로부터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V-1] 성폭력피해아동의 심리적 특성



4. 성폭력피해아동의 부모자녀 관계

〈표 V-10〉 가족관계적 특징 문항

가족관계적 특징	문항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역코딩)
	내가 외출했을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역코딩)
가정내 방입수분	학교나 학원에서 돌아왔을때 집에 어른이 아무도 안계시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이나 어른들 없이 밤늦게까지 나 혼자 또는 아이들끼리 집을 본 적이 있다
부모의 폭력성	부모님은 화가 나면 나에게 욕을 한다
	부모님은 싸우실 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진다
척도	부모님이 싸우실 때 무섭고 불안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4): 4점척도

<표 V-10>는 응답아동의 가족관계적 특징을 나타내는 문항이다. 크게 부모와의 의사소통(얼마나 부모와 빈번하게 대화하지 못하고 있는가?), 가정내 방임수준(얼마나 아동이 부모로부터 돌봄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부모의 폭력성(얼마나 아동의 부모의 폭력적 성향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가?)의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동종 범주의 문항들은 합산한 후 단일지표로 평균화하였고 일부 문항은 용도에 맞게 역코딩되어있다. 모든 지표는 그 값이 높을수록 아동이 부정적 가족관계에 노출되어있도록 고안되었다.

<표 V-11> 성폭력피해아동의 가족관계적 특징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부모와의 의사소통	2.06 (0.67) N=266	1.91 (0.68) N=4392	1.92 (0.68) N=4658
	T=3.426***		
가정내 방임수준	2.48 (0.83) N=263	2.21 (0.86) N=4343	2.23 (0.86) N=4606
	T=4.859**		
부모의 폭력성	1.96 (0.82) N=265	1.64 (0.66) N=4378	1.66 (0.67) N=4643
	T=7.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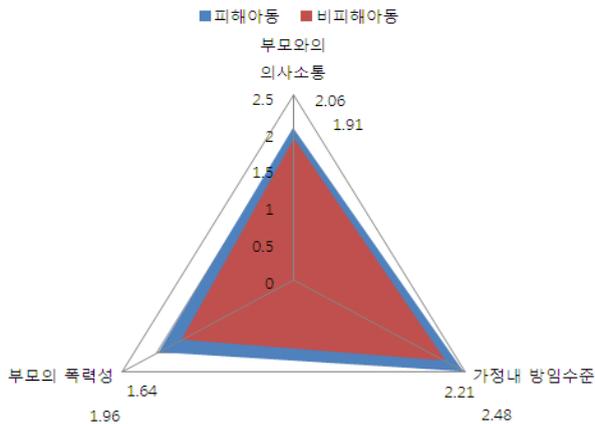
- 주: 1. 평균, 표준편차, 관찰치 순
 2.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4)
 3. *p<.05, **p<.01, ***p<.001

<표 V-11>는 이러한 아동의 가족관계적 특징을 나타내는 세 가지 지표에 대해 성폭력 피해아동과 비피해아동의 평균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피해아동은 평균 2.06점으로 비피해아동의 1.91점보다 높았으며 이는 성폭력 피해아동이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부모와의 대화가 저조한 편이라는 특징을 나타내어 준다. 가정내 방임수준에서

는 피해아동이 2.48점으로 비피해아동의 2.21점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대체로 피해아동이 비피해아동에 비해 가정으로부터 잘 보호받거나 돌봄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폭력성에서는 피해아동이 1.96점으로 비피해아동의 1.64점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피해아동이 비피해아동에 비해 부모의 폭력행위에 더 자주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성폭력 피해아동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저조하고 대체로 가정으로부터 잘 돌봄받고 있지 못하여 방임되고 있으며, 더 심각하게는 부모의 폭력으로부터 자주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정 내에서 보호의 결핍과 가정폭력의 노출은 아동이 성폭력 피해에 취약하도록 만드는 주요 변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림 V-2] 성폭력피해아동의 가족관계적 특징



5. 성폭력피해아동의 안전인식 및 위험대처

가. 거주지역에 대한 위험 인식 수준

<표 V-12>는 조사아동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동네가 얼마나 위험하다고 느끼는지 위험인식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아동집단에서는 전체 아동 중 약 25%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고 체감하고 있었다. 이는 비피해아동 집단 중 거주지역을 위험하다고 인식한 경우가 약 15%에 머문 점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있다. 피해아동과 비피해아동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피해아동이 평균 2.14점을 나타내면서 비피해아동의 2.00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거주지역을 더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아동은 대체로 공간적으로 폭력피해에 취약한 지역이나 심리적으로 안전의 위협감을 느끼는 공간에서 거주 혹은 체류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된다.

〈표 V-12〉 거주지역에 대한 위험인식수준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전혀 안전하지 않다	6 (2.47%)	54 (1.38%)	60 (1.45%)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57 (23.46%)	569 (14.58%)	626 (15.10%)
안전한 편이다	147 (60.49%)	2,615 (67.02%)	2,762 (66.63%)
매우 안전하다	33 (13.58%)	664 (17.02%)	697 (16.82%)
전체	243 (100.0%)	3,902 (100.0%)	4,145 (100.0%)
집단비교 (1~4: 높을수록 위험하다)	2.14 (0.67) N=243	2.00 (0.60) N=3902	2.01 (0.61) N=4145
T=3.572***			

- 주. 1. 집단비교: 평균, 표준편차, 관찰치 순
 2. 4점 척도, 매우 안전하다(1)~전혀 안전하지 않다(4)
 3. *p<.05, **p<.01, ***p<.001

나. 통학길에 대한 위험인식

<표 V-13>는 통학길에서 조사대상 아동이 얼마나 위험을 체감하고 있는지의 위험인식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경우 전체 피해 아동 270명 중 43.33%가 통학길을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비피해아동의 28.56%와 대비하여 보면 약 2배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아동의 경우 비피해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학길을 위험한 공간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아동에게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기에 가장 안전해야할 통학길이 위험노출에 있어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V-13〉 통학길의 위험인식수준

위험인식수준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학교와 집 사이에 으숙한 곳을 지나야하기 때문에 무섭다	있다	117 (43.33%)	1,254 (28.56%)	1,371 (29.42%)
	없다	153 (56.67%)	3,136 (71.44%)	3,289 (70.58%)
	전체	270 (100.0%)	4,390 (100.0%)	4,660 (100.0%)

〈표 V-14〉 통학길의 위험인식수준(T-test)

위험인식수준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학교와 집 사이에 으숙한 곳을 지나야하기 때문에 무섭다	0.31 (0.46) N=268	0.19 (0.39) N=4394	0.20 (0.40) N=4662
T=-4.545***			

- 주. 1. 집단비교: 평균, 표준편차, 관찰치 순
2. 2점 척도, 예(1)-아니오(2)
3. *p<.05, **p<.01, ***p<.001

<표 V-14>는 앞서 제시한 통학길에 대한 아동의 위험인식에 대해 t검정을 시도한 표이다. 척도는 응답아동이 통학길에 대해 위험을 인지할 경우

1로,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평균 0.31점으로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0.19점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면서 통학길에서 위협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0.001이하의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 위험 공간에 머문 경험

〈표 V-15〉 위험공간에 머문 경험

위험공간에 머문 경험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인적이 드문 장소나 으스스한 골목길로 혼자 다니는 적이 있다	있다	198 (73.88%)	2,244 (51.28%)	2,442 (52.58%)
	없다	70 (26.12%)	2,132 (48.72%)	2,202 (47.42%)
	전체	268 (100.0%)	4,376 (100.0%)	4,644 (100.0%)
공중화장실을 혼자 간 적이 있다	있다	215 (79.63%)	2,888 (65.88%)	3,103 (66.67%)
	없다	55 (20.37%)	1,496 (34.12%)	1,551 (33.33%)
	전체	270 (100.0%)	4,384 (100.0%)	4,654 (100.0%)

〈표 V-15〉는 조사아동이 위험공간에 머문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인적이 드문 장소나 으스스한 골목길로 혼자 다니는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성폭력 피해아동은 전체 피해아동 중 73.88%가 그렇다고 응답하면서 비피해아동의 51.28%에 비해 약 20%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공중화장실을 혼자 간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피해아동은 약 79.63%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비피해아동의 65.88%보다 높은 수준을 웃돌았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아동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는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공간에 머물렀던 경험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경험과 지역적 위험공간의 체류 경험 내지 위험행동의 노출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표 V-16〉 위험공간에 머문 경험(T-test)

위험공간에 머문 경험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인적이 드문 장소나 으스한 골목길로 혼자 다닌 적이 있다	0.73 (0.44) N=268	0.51 (0.49) N=4376	0.52 (0.49) N=4644
	T=7.231***		
공중화장실을 혼자 간 적이 있다	0.79 (0.40) N=270	0.65 (0.47) N=4384	0.66 (0.47) N=4654
	T=4.663***		

- 주: 1. 평균, 표준편차, 관찰치 순
 2. 2점 척도, 예(1)-아니오(2)
 3. *p<.05, **p<.01, ***p<.001

〈표 V-16〉은 앞서 제시한 위험공간에 머문 경험에 대해 성폭력 피해아동과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차이를 T-test로 검정한 결과이며 문항의 값은 예(1), 아니오(0)의 이분변수로 구성하였다. “인적이 드문 장소나 으스한 골목길로 혼자 다닌 적이 있다”에서는 성폭력 피해아동이 평균 0.73점을 응답하면서 비피해아동의 0.51점보다 높았다.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을 혼자 간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아동이 평균 0.79점으로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0.6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으스한 골목길, 공중화장실 등의 위험공간에 머문 경험이 많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라.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

위험상황의 직면과 위험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는 피해아동과 비피해아동 사이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집에 혼자 있을 때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집단에서는 전체 피해아동 중 43.33%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면서 비피해아동(28.56%)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V-17〉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집에 혼자 있을때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 적이 있다	있다	117 (43.33%)	1,254 (28.56%)	1,371 (29.42%)
	없다	153 (56.67%)	3,136 (71.44%)	3,289 (70.58%)
	전체	270 (100.0%)	4,390 (100.0%)	4,660 (100.0%)
누군가 강제로 내 몸을 만진 적이 있다	있다	55 (20.37%)	270 (1.80%)	134 (2.88%)
	없다	215 (79.63%)	4,307 (98.20%)	4,522 (97.12%)
	전체	270 (100.0%)	4,386 (100.0%)	4,656 (100.0%)
(경험아동에 한해) 그런 경우, 그 사람에게 싫다고 말했다	있다	34 (70.83%)	40 (68.97%)	74 (69.81%)
	없다	14 (29.17%)	18 (31.03%)	32 (30.19%)
	전체	48 (100.0%)	58 (100.0%)	106 (100.0%)
(경험아동에 한해) 그런 경우, 그 사람으로 도망쳤다	있다	27 (57.45%)	43 (74.14%)	70 (66.67%)
	없다	20 (42.55%)	15 (25.86%)	35 (33.33%)
	전체	47 (100.0%)	58 (100.0%)	105 (100.0%)

한편, “누군가가 강제로 내 몸을 만진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서는 피해아동은 전체 피해아동 중 20.3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비피해아동의 1.8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가해행동을 거부한 아동은 피해아동의 경우 70.83%로 비피해아동의 68.97%보다 미미하게 높았지만, 가해자로부터 도망쳤던 경우는 피해아동이 57.45%, 비피해아동이 74.14%를 각각 나타내면서 피해아동이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방어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는 점을 시사해주었다.

〈표 V-18〉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T-test)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집에 혼자 있을때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 적이 있다	0.43 (0.29) N=270	0.28 (0.29) N=4390	0.29 (0.45) N=4660
	T=5.182***		
누군가 강제로 내 몸을 만진 적이 있다	0.20 (0.40) N=270	0.01 (0.13) N=4386	0.02 (0.13) N=4656
	T=18.338***		
(경험아동에 한해) 그런 경우, 그 사람에게 싫다고 말했다	0.70 (0.45) N=48	0.68 (0.46) N=58	0.69 (0.46) N=106
	T=0.206		
(경험아동에 한해) 그런 경우, 그 사람으로 도망쳤다	0.57 (0.49) N=47	0.74 (0.44) N=58	0.66 (0.47) N=105
	T=-1.815		

- 주. 1. 평균, 표준편차, 관찰치 순
 2. 2점 척도, 예(1)~아니오(2)
 3. *p<.05, **p<.01, ***p<.001

〈표 V-18〉은 앞서서 제시한 위험상황의 대처에 대해 성폭력 피해아동과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차이를 검증한 표이다. 문항의 값은 예(1), 아니오(0)의 이분변수로 구성하였다. 집에 혼자 있을때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평균 0.43점을 나타내면서 일반아동의 0.28점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누군가가 강제로 내 몸을 만진적이 있는지 여부에서는 성폭력 피해아동이 평균 0.20점으로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0.01점보다 훨씬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즉, 성폭력 피해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 외 실제 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아동과 일반아동 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 성폭력 예방교육 및 안전교육

〈표 V-19〉 성폭력 예방안전교육

성폭력 예방안전교육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학교에서 성교육이나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있다	254 (94.78%)	4,131 (94.27%)	4,385 (94.30%)
	없다	14 (5.22%)	251 (5.73%)	265 (5.70%)
	전체	268 (100.0%)	4,382 (100.0%)	4,650 (100.0%)
낯선 사람이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적이 있다	있다	232 (86.25%)	3,997 (91.17%)	4,229 (90.89%)
	없다	37 (13.75%)	387 (8.83%)	424 (9.11%)
	전체	269 (100.0%)	4,384 (100.0%)	4,653 (100.0%)
아동안전지킴이집에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안다	169 (62.83%)	2,985 (67.92%)	3,154 (67.62%)
	모른다	100 (37.17%)	1,410 (32.08%)	1,510 (32.38%)
	전체	269 (100.0%)	4,395 (100.0%)	4,664 (100.0%)

〈표 V-19〉는 조사아동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나타낸 것이다. “학교에서 성교육이나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피해아동이 94.78%, 비피해아동이 94.27%를 각각 나타내면서 학교의 성폭력 관련교육에 대한 이수경험은 피해아동집단과 비피해아동 집단 사이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낯선 사람이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피해아동이 86.25%, 비피해아동이 91.17%를 각각 나타내면서 피해아동의 경우 비피해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에서의 성폭력 관련 교육이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아동안전지킴이집에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의 문항에 대해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는 아동이 피해아동 집단의 경우 62.83%에 그쳤고 비피해아동은 이보다 좀 더 높은 수치인 67.92%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아동은 대체로 학교 가정으로부터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으며 안전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에 대한 지식 역시 저조한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성폭력 예방에 위한 가정 및 제도적 기관의 안전교육이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V-20〉 성폭력 예방안전교육(T-test)

성폭력 예방안전교육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학교에서 성교육이나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0.94 (0.22) N=268	0.94 (0.23) N=4382	0.94 (0.23) N=4650
T=0.345			
낯선 사람이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적이 있다	0.86 (0.34) N=269	0.91 (0.28) N=4384	0.90 (0.28) N=4653
T=-2.727**			
아동안전지킴이집에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0.62 (0.48) N=269	0.67 (0.46) N=4395	0.67 (0.46) N=4664
T=-1.733			

- 주. 1. 평균, 표준편차, 관찰치 순
 2. 2점 척도, 예(1)-아니오(0)
 3. *p<.05, **p<.01, ***p<.001

<표 V-20>는 앞서 제시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에 대해 성폭력 피해아동과 일반아동의 차이를 T-test로 검정한 표이다. 문항의 값은 예(1), 아니오(0)의 이분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내는 항목은 낯선 사람이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적이 있는지 여부이며,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이 평균 0.86점에 머물렀던 반면,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은 0.91점으로 더 높게 나타나 성폭력 피해아동은 대체로 가정으로부터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주의를 전달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등 제도적 기관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성폭력 위협에 대한 부모의 주의깊은 교육이 자녀의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6. 성폭력피해아동의 가해경험

가. 성폭력피해아동의 가해유형별 가해율

성폭력피해가 심각한 위협이며 좀 더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이러한 폭력을 내면화함으로써 다시 폭력의 가해자이자 생산자가 되는 악순환을 되물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아동의 일생에 있어 반복적으로 재현될 수 있는데(이미정 외, 2009), 동시에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경험은 피해아동의 일생에 걸쳐 또 다른 아동에게 학습받은 폭력을 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성폭력 가해경험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동 성폭력에 대한 연구는 단일한 성폭력 사건의 분석 하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동의 성장기에서 반복되는 폭력의 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숙지하고, 중층적으로 구성된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하여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하단부터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가해율과 다양한 가해경험의 중층성이 나타나는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이러한 폭력을 내면화함으로써 다시 폭력의 가해자이자 생산자가 되는 악순환을 되물림할 수 있다. <표 V-21>는 한 가지 유형이상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집단과 피해를 한번도 경험한 바 없는 아동집단을 나누어 다양한 폭력군에 있어 가해를 저지른 경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누군가에게 강제로 키스를 가해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피해아동 집단에서는 전체 피해아동 중 5.51%의 가해율을 보였으며 이는 비피해아동의 0.09%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강제로 누군가를 포옹한 경험에서는 피해아동의 가해율이 10.71%로 비피해아동의 가해율인 0.28%보다 현저히 높았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던 경험에서는 피해아동의 가해율이 5.58%, 비피해아동의 가해율이 0.05%로 나타났고, 누군가의 성기

를 강제로 만진 경험에 있어서는 피해아동이 18.365, 비피해아동이 0.16%로 피해아동의 가해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누군가에게 강제로 성기를 노출시킨 경험에서는 피해아동의 가해율이 3.98%, 비피해아동의 가해율이 0.02%로 각각 집계되었고, 누군가에게 강제로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한 경험은 피해아동집단이 0.80%, 비피해아동이 0.05%의 가해율을 보이면서 피해아동의 가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21〉 폭력유형별 가해경험: 피해아동과 비피해아동의 가해율

가해유형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있다	없다	전체	있다	없다	전체
키스	14 (5.51%)	240 (94.49%)	254 (100.0%)	4 (0.09%)	4,275 (99.91%)	4,279 (100.0%)
포옹	27 (10.71%)	225 (89.29%)	252 (100.0%)	12 (0.28%)	4,268 (99.72%)	4,280 (100.0%)
가슴만지기	14 (5.58%)	237 (94.42%)	251 (100.0%)	2 (0.05%)	4,277 (99.95%)	4,279 (100.0%)
성기만지기	47 (18.36%)	209 (81.64%)	256 (100.0%)	7 (0.16%)	4,271 (99.84%)	4,278 (100.0%)
성기노출	10 (3.98%)	241 (96.02%)	251 (100.0%)	1 (0.02%)	4,276 (99.98%)	4,277 (100.0%)
성기만지지 강요	2 (0.80%)	248 (99.20%)	250 (100.0%)	2 (0.05%)	4,274 (99.95%)	4,276 (100.0%)

종합해보면, 모든 성폭력 유형에 있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아동집단은 비피해아동집단에 비해 폭력 가해율이 대부분 현저하게 높았으며 폭력의 경험이 피해와 가해를 되물림하며 악순환한다는 점을 나타내었다. 피해아동집단에서 가장 가해율이 높게 나타난 폭력유형은 성기만지기(18.36%), 포옹(10.71%)이었으며 이는 중한 성폭력에 해당되는 가해유형이 경한 성폭력에 비해 더 가해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게 해준다.

〈표 V-22〉 성폭력 피해아동의 가해경험

가해 경험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76 (29.34%)	183 (70.66%)	25 (0.58%)	4,256 (99.42%)	101 (2.22%)	4,439 (97.78%)
집단비교	0.29 (0.45) N=259		0.00 (0.07) N=4281		0.02 (0.14) N=4540	
T=34.160***						

- 주: 1. 집단비교: 평균, 표준편차, 관찰치 순
 2. 한 가지 유형이상의 성폭력을 가해한 경험이 있는 아동일 경우="있다(1)"
 3. *p<.05, **p<.01, ***p<.001

<표 V-22>는 성폭력 유형 중 한가지 이상의 가해를 행사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피해아동집단과 비피해아동집단을 나누어 그 비중과 평균치의 유의성을 테스트한 결과이다. 이를 살펴보면, 한 가지유형이라도 성폭력을 가해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성폭력 피해아동집단에서 29.34%로 나타내면서 비피해아동의 가해율인 0.58%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해경험을 집단간 평균값을 비교할 경우 피해아동은 평균 0.29점으로 비피해아동의 0.00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해점수를 나타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성폭력의 가해율은 성폭력의 비피해아동보다는 피해아동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성폭력피해의 반복적 경험

<표 V-23>는 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성폭력 유형을 얼마나 중첩적으로 가해한 경험이 있는지 피해아동집단과 비피해아동집단을 나누어 폭력가해의 중첩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성폭력 피해아동집단의 경우 2회 이상의 성폭력을 가해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전체 아동 중 약 3%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동일항목에 있어 비피해 아동집단으로부터는 0.04%에 그친 것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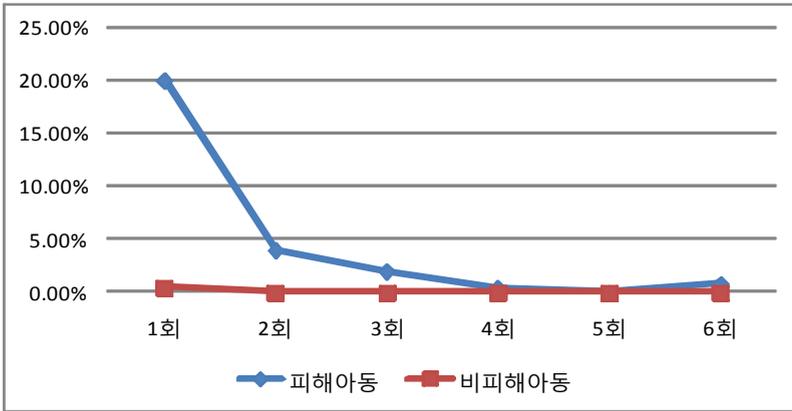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폭력 가해횟수의 평균값을 집단별로 비교할 경우, 피해아동은 평균 0.40점을 나타내면서 비 피해아동이 0.00점으로 거의 전무한 것에 대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확인해준다. 따라서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아동일수록 성폭력을 가해한 경험도 높고 이러한 가해의 유형 역시 중첩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V-23〉 성폭력피해의 반복적 경험

가해 경험	피해아동	비피해아동	전체
0회	182 (72.80%)	4,250 (99.46%)	4,432 (97.99%)
1회	50 (20.00%)	21 (0.49%)	71 (1.57%)
2회	10 (4.00%)	1 (0.02%)	11 (0.24%)
3회	5 (2.00%)	1 (0.02%)	6 (0.13%)
4회	1 (0.40%)	0 (0.00%)	1 (0.02%)
5회	0 (0.00%)	0 (0.00%)	0 (0.00%)
6회	2 (0.80%)	0 (0.00%)	2 (0.04%)
전체	250 (100.0%)	4,273 (100.0%)	4,523 (100.0%)
집단비교 (가해중첩수준 평균)	0.40 (0.85) N=250	0.00 (0.08) N=4273	0.02 (0.23) N=4523
T=27.974***			

- 주: 1. 집단비교: 평균, 표준편차, 관찰치 순
 2. 성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가해유형의 개수 합산
 3.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V-3] 성폭력 피해의 반복 경험



7. 분석결과

가. 성폭력 피해아동의 특징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일반화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성폭력 피해경험과 가정환경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 아동은 비피해아동에 비해 가정환경에서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 중에 있거나 가계의 경제적 지위가 낮고 일반적인 가계부양자로 추측할 수 있는 부친의 경제활동 종사률이 낮은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가정환경적 변인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피해아동과 비피해아동의 구성비는 1~4%의 미미한 수준에서 그 차이를 노정시키고 있었으나, 전체 4685명의 응답아동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이 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모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리라고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성폭력 피해경험 아동의 심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피해아동은 비피해아동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더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우울도가 높으며 공격성 역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교하여 볼 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가족관계에서의 특징에서도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비피해아동에 비해 부모와의 빈번한 의사소통 정도가 낮은 편이고 부모나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임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또한 더욱 심각하게는, 성폭력 피해아동일 경우 일반아동에 비해 부모로부터의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경우가 높았다. 이를 통해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안정된 정서적 유착관계와 충분한 돌봄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아동일수록 성폭력 피해에 더 취약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지역안전의식을 살펴보면 피해아동은 비피해아동에 비해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을 더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교와 집 사이의 통학길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이 더 안전에 대한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혼자 있을 때 낯선 외부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의 접촉을 경험한 경우도 피해아동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인적이 드문 장소 등이나 공중화장실 등 위험공간에 머물렀던 경험 역시 피해아동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아동은 대체로 거주지역, 주거환경, 등하교길 등에서 공간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한편, 이처럼 성폭력 피해아동이 공간적 혹은 행동적으로 더 위협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에 대한 예방안전교육을 이수받은 경험은 비피해아동에 비해 더 저조한 편으로 드러났다. 즉, 피해아동은 특히 가정으로부터 성폭력 피해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낮게 나타났으며 그 외 학교로부터의 교육이나 아동안전지킴이집과 같은 제도적 대응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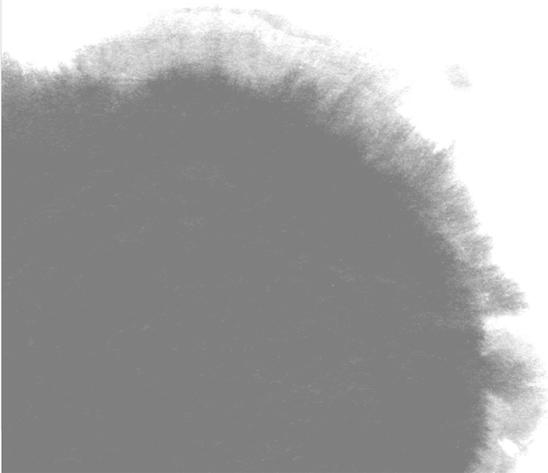
종합해보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비피해아동에 비해 개인심리적 특징, 가정환경 및 가족관계, 거주공간의 지역적 안전성, 위험대처를 위한 교육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부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아동은 개인심리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가정환경적으로 잘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거주지역의 공간적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특히 이러한 주변환경의 높은 위험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가정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의 안전교육을 습득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문제시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나. 성폭력 피해아동의 가해경험

아동기에 있어서 폭력의 피해경험이 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폭력피해가 피해자에게 스스로 내면화되고 가해자가 되어 이러한 폭

력피해를 다시 되물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폭력의 내면화 문제가 성폭력 피해아동에게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성폭력의 피해를 한 가지라도 경험한 아동일 경우 한번도 피해를 입은 적 없는 아동에 비해 모든 성폭력 유형에 있어서 높은 가해경험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아동은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가해경험을 중첩하고 있을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폭력의 피해와 가해는 항상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으며, 한 가지 유형의 폭력에 노출될 경우 여러 종류의 폭력피해경험과 가해경험들이 중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아동성폭력은 단일한 경험이 아니라 폭력에 취약한 환경으로부터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중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폭력 피해아동이 또 다른 성폭력 가해자나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와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06

지역사회 이동안전 관련
문제점 및 장애요구



VI. 지역사회 아동안전 관련 문제점 및 정책욕구

1. 학교 내 아동안전 문제점 및 요구

부모나 성인의 보호 없이 스스로 돌보아야 하는 자기보호 아동의 안전과 돌봄을 위한 정책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중소도시인 충북 청주시, 그리고 농어촌 지역을 대표하는 전북 군산시의 아동 안전 관련 지역 주체인 교사, 학부모, 방과후 보육교사, 지역연대위원 등 4개 집단에 대해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집단들이 사회적으로 처한 위치나 역할에 따라 아동 안전과 관련된 현실 인식과 욕구들이 서로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지역사회 아동안전의 해결주체인 학교와 가정, 방과후 보육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었으며, 네 개의 단위들이 연계를 통해서 아동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초점 집단면접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들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아동안전 대책 매뉴얼화의 필요

먼저 학교 내 아동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과 관련해서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성폭력 등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전문성을 확보한

다양한 매체의 교재개발이 필요하며, 사후대책보다 예방으로서 ‘안전’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위급 상황에서 자연스레 대처 가능하도록 ‘훈련’을 통해 몸에 배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 폭력, 성폭력 등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후적이고 일회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보다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교사들이 교과 안에서 수시로 교육을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내기에 역부족이므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전문 강사에 의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역연대 위원들은 안전에 대한 개념이 사후 대책으로서보다는 사전 예방으로서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동안전사고의 예방은 교육에서 더 나아가 아동들이 위급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처가 가능하도록 ‘훈련’을 통해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의 결과가 몸의 습관으로 되어서 위기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전이라는 개념을 성폭력이나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 후에 안전이라고 말을 지루 그런 것들을 환기시키는 것보다....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하듯이 그게 같이 가야 되는데....안전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개인개인한테 정신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거죠(동작구지역연대).

아이들에게는 정말 1회성이 아니라 정말 자주 재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예요....교육만 하면 안 되고 몸에 습관이 붙이도록 하는 것이 훈련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와서 대응력이 생기게 하는 것이 훈련인데 우리가 교육교육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어요. 안전 교육만 아는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안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사후적이라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이제 훈련해서 예방도 할 수 있겠다 시간을 충분히만 주면은....그러면 대상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급한 위기 상황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걸러내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교육은 집중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청주지역연대).

나. 학교 및 방과후 시설 안전경비 시스템 구축

둘째, 학교내 아동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전경비시스템을 마련하여 외부인 출입증발급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내 아동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은 물리적인 안전지원 시스템이라고 교사들은 얘기하고 있다. 우선 정부예산을 투입해서 외부인 출입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경비 시스템이 마련된 기반 위에서, 교사들의 아동 안전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들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교사들이 학부모와 일반 외부인을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외부인 단속을 하는 것은 어렵다. 학교 안에서는 교사를 비롯하여 학교 관계자나 방문자들이 신분증을 착용하고 다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이 될 것이다.

학교 자체에서 보안이 돼서 신분증 다 착용하고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누가 선생님이 딱 봐도 그 사람이 진짜 학부모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을 할 수도 있고 훨씬 안전해지죠(동작구 교사).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려면 그 공간이 확보될 수 있게끔 물리적으로만 들어주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초소라든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안전한 학교로 뽑혔더라고요. 예산 지원 받아서 초소 생기고 자동차 개폐기 생기고 그 다음에 모든 문이 자동문으로 바뀌었어요. 체육 시간에 체육 교사가 체육을 한 다음에 아동들을 인솔해서 들어갈 때 전자 카드를 대더라고요. 그러면 문이 열려요. 인증을 받아요. 그러면 애들 데리고 교사가 인솔해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물리적으로 안전해야 이게 학교라는 공간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 저희한테 학교가 안전하게 하세요, 외부인 단속하라고 자꾸 지침이 내려오지만 교사들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수업 안 하고 나가서 대문을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청주시 교사).

또한 야간 돌봄 교실을 일반 맞벌이 가정의 아동에게 확대하고 초인종과

모니터 설치 등 야간과 휴일에 이동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귀가 시 부모가 반드시 데려가야 한다는 조항을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청주시와 군산시의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야간 돌봄 교사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넓고 어두운 학교의 한 구석 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교사들은 각기 귀가시간이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초인종과 모니터 설치 등 아동과 돌봄 교사의 안전을 위한 인프라 설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휴일보육의 경우 학교를 외부인에게 개방할 경우 화장실을 같이 써야 하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대도시와 다른 지역의 특성 중 야간 돌봄 교실을 운영할 경우 일률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러 오도록 지침을 내린다면 지역의 경우 아이들을 맡길 부모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0시까지로 나와 있는데 9시까지 5시부터 9시까지 따로 선생님이 따로 있으시고요.... 오늘부터 식당에서 하는데 오늘 밤에 문 잠그는 것을 가장 신경써야 되겠다라고요. 퇴근 할 때 제가 가장 늦게 퇴근을 하는데 야간 돌봄을 하기 전이니까 보면 아이들이 교실에 있어요....아이들이 다 똑같이 9시에 가는 것이 아니라 8시 40분부터 부모님이 데리러 와야지만 아이들을 보내는 것으로 지금 이제 짜 놔는데 아이들이 다 같은 시간에 같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는 7시에 가는 아이, 8시 30분에 가는 아이 내려가서 가는 거 확인하고 문 잠그고 오고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걱정이예요...초인종을 달아서 모니터 그것을 달아서 누구 어머니라고 하면 개만 내려 주고 그런 방법을 써야 될 것 같네요(군산시 보육교사).

저는 들으면서 여기는 서울에 있는 학교이고 저희는 좀 그런데 저희와 비교를 해 보면 상상이 안 가는 것이 많아요. 누가 데리러 와야 애들을 받는다 그러면 저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세 학급이지만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한 부모인 데다가 다 시설 아이들인데다가 아파도 집을 못가요. 만약에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학교에 놓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집에 가면 혼자 있고 그러니까요(청주시 보육교사).

다. 안전지킴이 제도의 내실 강화

배움터지킴이와 안전지킴이의 역할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며, 사고 위험이 높은 ‘방과후’ 시간대에 안전지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폭력과 성폭력의 위험 등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배치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 제도는 풀타임 상근인력을 지원하여 외부인 출입단속이나 CCTV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는 외진 곳을 순찰함으로써 불충분하지만 나름대로 교내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사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아직은 정착되지 않아서 예산과 지침을 통해서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도 그 분이 한 바퀴씩 돌아 주시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러기도 하고 또 저희 학교 여기 강당 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많이 안 다니는 곳인데 그런 곳도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그런 분들이 있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료 준비실이라고 있거든요. 학습자료 같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거기에 계시다가 이렇게 한 번씩 돌고 그래요...이것을 정말 학교하고 연계가 되게 하려면 좀 더 엄선을 해서 대우도 좋게 하고 정말 학교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배움터 지킴이가 정말 정착이 되어서 우리 학교안전이나 아동안전이나 모든 면에서 다 좋을 것 같아요(군산시 교사).

한편 학부모들은 학교내 폭력 방지 등 아동안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와 등하교길 안전지도를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수업시간보다는 하교후의 교내와 학교 주변의 아동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간대의 활동이 중요한데, 아동안전을 위한 제도들이 주로 정규 수업시간과 등하교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제도들이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지속성을 갖고 진

행되지 않고, 이동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어머니들이 주축이 되어 자원활동 수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등하교 때보다도 등하교 때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다니니까 별로 사고 날 위험이 없는데 방과후 학습이나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올 때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이들 등하교 때는 사실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 사람들은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그런 것을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럴잖아요. 등하교 때는 애들이 몰려다니니까 무슨 일을 안 하는데 가령 방과후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논다거나 이렇게 툼툼이 하나씩 다닌다거나 그럴 때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도대체가 정책이 탁상정책으로 모든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봐서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머리에서 우러나는 대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7시30분이나 그때쯤 해서 보안관을 해 주고 그리고 방과후에 아이들 많이 몰려다니는 때는 하지 말고 학생들 드문드문 있을 때 놀이터 같은 데에서 배회하는 애들 보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동작구 학부모).

아까 학교 안전지킴이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교통을 썼는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실사가 되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안 받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 분이 서 계시는 것이 불안한,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은 보면 양쪽에 차가 오는가 보고 나서 그리고 일단 선생님들이 가운데에 가서 그리고 차를 멈춘 다음에 아이들을 건너게 하는데 그런데 그 분은 그냥 무조건 아이가 오면 이것만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안했어요(군산시 교사).

라. 안전사고 발생 이후 학교측의 적극적 대응 강화

교내 이동안전사고 처리 및 예방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평가 중심의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교육적 차원의 해결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긍정적 기능을 회복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사들은 학교내 이동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를 은폐시키기보다는 사건을 드러내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학교 환경개

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내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겠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를 정확히 규명하여 차후에 이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지원하기보다 책임을 학교나 담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인사평가와 연결시키고 학교예산과 연동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사건을 공식화하기보다는 은폐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영향으로 교육도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교사의 위치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위치로 전락함으로써 교사들 역시 매우 위축되어 있었다.

학교에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모든 공기관이 그럴겠지만 다 감춥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언론기사화 되거나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에 언론기사화 되거나 학부모님이 민원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한 번 엮어 버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학교에서는 최대한 말이 안 나가게끔....가장 큰 것은 역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면 이 민원을 해소해야 되고 또 안 좋은 것이 알려지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진상 조사 나오고 감사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아무래도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민사상에 불이익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그러니까 조직을 움직이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예산과 인사인데 공무원로서는 역시 인사를 가지고 건드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청주시 교사).

그리고 지금 이제 수요자 중심 교육해서 저희도 소비자와 수요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되고 저희는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움짱달싹을 못 하는 거죠. 뭐가 하나 이게 걸렸다 하면 학교에 안 좋은 소문 이라든지 교육청에 민원 글이라도 하나 올라가면 학교가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완전히 약자일 수밖에 없고 사명감이니 그런 물리적인 약자의 입장이고 하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 할 수도 없고 하라니까 하는 것이고 움짱달싹을 할 수 없어요(청주시 교사).

2. 이동안전을 위한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

가. 이동안전 관련 부모교육의 필요성

가정내 이동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며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부모들은 하교 이후의 자녀의 동선을 파악하고 비상연락망을 확인해야 하며, 부모들이 이동안전을 위한 학교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자녀안전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특히 부모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큰아빠, 삼촌 등의 잘못된 호칭을 써서 아이들이 성추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모들의 역할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교사들의 애로사항은 주로 부모들이 돈을 벌기 위해 외지로 떠나고 조부모나 다른 친척집에 맡겨진 아이들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였다. 물론 부모가 다 있으나 실제적인 역할과 관심을 갖지 못하는 조건에 있는 맞벌이 부모 또는 재혼 가정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면접사례에서 보듯이 부모가 있더라도 자식의 학교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어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도 외면하고 치료받으려 하지 않는 현실 역시 교사 한 사람의 노력으로 아동의 문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부모님께 아동 상담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안 나왔을 때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분명히 집에는 있는데. 아이는 있대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엄마가 동네 사람 시켜서 이렇게 가보니까 침대 밑으로 숨는다든지 그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에 잡혀야 좋지 않겠나 싶어서 상담을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부모님들이 정신적인 상담을 기피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안

하시고 우리 아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군산시 교사).

맞벌이 그런 가정보다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역할을 못하는 집 아이들이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로 손길이 하나도 안 닿고 차라리 시설에서 사는 것이 차라리 그 아이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아이들이 진짜 1년에 1, 2명 있어요...재작년에 우리 반 어떤 여자 아이 한 명은 부모가 새엄마이고 밑으로 동생을 하나 낳았고 자기 밑으로 자기 친동생이 하나 있고 새엄마가 낳은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기가 싫어서 큰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아버지도 큰아버지하고 큰아버지 아들 이렇게 둘만 사니까 그 집을 자꾸 가니까 담임인 저로서는 여자 아이가 키도 크고 성숙한 편이었어요.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나 걱정이 돼서 개를 데려다가 성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그 이야기를 계속 주지를 시켰는데...교사 입장에서 그 아이하고 그 아빠, 얼마나 큰아버지까지는 이야기를 못 했고 아빠가 학교에 오셔서 그런 말들을 돌려가면서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도 아이들 예방 지도하는데 좀 참고로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것은 교사의 노력으로만 어떻게 해 줄 수 없더라고요(군산시 교사).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들 역시 아동안전을 위해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정 및 부모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안전 교육과 사고예방이 효과를 거두려면 가정 내 부모 역할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결혼한다고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돌봄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특히 방과후 아동안전과 관련해서 부모가 비상연락망과 학교 후 아동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어서,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때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너무 편안하게 안일하게 계시는 부모님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센터에서 전화를 하면 주 보호자가 할머니랑 계시는 경우도 있고 또 집에 아무도 안 계

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어머니들이 관심을 안 갖고 계세요. 애가 이 쪽에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 시간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시고 당연히 거기 있으려니 하고 그래서 앓차 하는 순간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대중 오는 시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전화를 드리거든요. 애가 학교에서 여기 왔다가 센터에 가는데 아직 안 왔어요. 어떻게 하죠? 개가 잘 다니는 곳이나 학교에 연락을 해서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 학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되는데 센터는 그게 연결이 잘 안 돼요. 나중에 전화하던지 다음 날 제가 안 와서 다시 확인 전화를 하면 ‘늦게 들어 왔어요’ 라고 그래요(동작구 보육교사).

나. 저소득층 아동돌봄 공백 지원

한부모 가정의 저소득층 부모들이 초등생 자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육구들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미취학아동을 둔 한부모에게는 유용한 정책이나 초등생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미흡하므로 개선될 필요가 있었으며, 급식보조 대상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한부모 가정의 자녀 돌봄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일을 하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취학 전 아동을 둔 한부모에게만 유용할 뿐 하교후 돌봄 공백 시간이 긴 초등학교 자녀들을 둔 한부모에게는 시간제약과 비용부담, 그리고 같은 돌보미가 지속적으로 파견되지 않는 등 이용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학기간의 자녀 돌봄의 공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의 현실에 맞게 아이돌보미 사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번거로워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그 시간에 매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선생님 것을 챙겨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한테 뭔가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번거로워요. 음식을 내가 잘 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같이 드시라고 할텐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아이 같으면 솔직히 아무렇게나 쥐도 먹지만 남

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잖아요. 집도 형편이 좋지 않은데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아이한테 얘기를 해서 몇 번 시켰더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한 달 동안 자가 혼자 끝나고 집에 와서 문 따고 들어와서 밥 챙겨 먹고 그러고 학원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동작구 한부모).

아이들보미 사업과 더불어 한부모 여성가장들이 지원을 받는 급식보조나 방과후 교실 보조의 경우,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해당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어서 아이들이 자신의 가정상황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여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한부모 아이들의 가정상황이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해당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사 개인의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아동 인권보장에 기반한 제도 운영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급식 보조 받는 것을 애들이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보니까 작년에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도 무료로 지원이 되잖아요. 애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예산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지 선생님이 와서 그랬대요. “야, 급식 보조 받는 애들 다 강당으로 모여. 전부 다 모여” 그렇게 한 다음에 “너네 왜 그거 신청 안 해? 다 신청해. 여름 방학에 전부 신청 해” 그렇게 말해서 개가 씩씩대면서 왔더라고요(동작구 학부모).

3. 방과후 아동 돌봄 지원 확대

가. 방과후 보육교사 협의체 구성

나홀로 아동의 안전증진을 위한 방과후 보육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제안이 있었다. 첫째, 지역사회 내 방과후 보육 선생님들 간의 협의를 위한 연대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앙부처에서 기획된 방과후 아동보육과 관련된 사업들은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오면, 보육 대상 아동의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때로는 필요한 정책의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야간 돌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의 중복성 해결과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방과후 아동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보호기관 간의 논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단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내에서 그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만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정책적인 면에서 좀 융통성 있게 아이들이 대상이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유용하게 잘 모든 것이 쓰여질 수 있느냐 학교, 아동센터, 공부방 이런 데에서 협력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군산시 보육교사).

현실적으로 중복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그런 아이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대로. 또 일부에서는 방학 때 되면 동사무소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학교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하고 중복되는 것이 사실 많아요. 프로그램이나 교육 같은 것도 중복되는 차원이 많은데 그것을 정부에서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조율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 복지쪽으로는 다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육 복지 쪽으로 나가주고 우리 지역

아동센터는 말 그대로 지역복지로다(청주시 보육교사).

사실 필요 아동들은 많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여기는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결혼 가정들이 많으니까 필요 아동들은 많은데 사실 학교에서 감당해야 되는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쪽에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역 아동센터가 많이 커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군산에 지역 아동센터가 52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야간 보육까지 하는 아동센터는 3분의 1 정도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방과후에 아이들이 오면은 다 저녁까지 먹여서 야간 9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9시 이후로 귀가 차량이 돌고 이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죠. 아무튼 학교 활동하고 지역아동센터 활동하고 사실 똑같은데 상당히 학교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여성가족부이고 보건복지부이고 서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경쟁에 어떤 그런 똑같이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뭘에도 불구하고 경쟁의 묘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군산시 보육교사).

기초지역단위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간 연대 기구에는 반드시 학교 교사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나홀로 아동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학교 교사들이 나홀로 아동안전을 위한 지역협의체에 참여해야 부모들과의 연계와 협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홀로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 보육교사협의체는 지역의 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나홀로 아동의 현실을 반영한 성폭력 등 아동안전을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파견하는 등 아동보호기관들의 아동안전사고 예방 역할을 지원·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지역아동센터가 3-7시까지 부모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지역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맞벌이 나홀로 아동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나홀로 아동의 실태 중 심각한 것으로 얘기된 것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 중 하교 후 부모 퇴근 시까지 방치되는 4시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나 차상위 계층 등은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등 사회 서비스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맞벌이 가구의 아동들이 3시 하교 이후 7시까지 방치되는 나홀로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 나홀로 아동의 문제는 특별한 소수 가정 내 아동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부모들과 그 아이들의 현실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로 맞벌이 부부 그러니까 아빠 엄마 퇴근 시간에 상담하기 전에 물어보죠. 주말부부도 요즘 많으시니까 엄마 아빠가 몇 시에 퇴근하는지 또 3교대 이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나고 그러면 형제끼리 그냥 밥 해 먹고 사실은 외국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아이들만 놓고 가면 처벌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되게 많이 걸려요. 학교 끝나고 부모님이 들어오는 7시까지 지금 저희가 일정이 3시에 끝난다면 그 4시간을 그냥 자기가 알아서 보내고 그냥 파악할 것도 없이 부모님이 없는 이상은 다 나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짧다 길다를 떠나서요...방과후 안전지도는 학교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원 생활이라든가 학원에서 사실은 되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청주시 교사).

또한 학부모나 보육교사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갈 경우 낙인 때문에 고학년 아동들이 기피하는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육교사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중심이라는 데서 오는 낙인문제를 개선하고 방치되고 있는 많은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의 안전한 보육을 위해 보편적 방과후 보육을 제공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고학년이 되니까 5학년쯤, 6학년쯤 되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안 가려고 해요. 창피하다고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그만큼을 보듬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학년이 높아지면 거기는 뭔가 못 살고 그런 애들만 다니는 곳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머리가 커서 그런 인식이 지들끼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가서 내가 그 부류에 속해서 애들한테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싫어지는 거죠. 애들이 사춘기가 되니까요(청주시 학부모).

맞벌이인데 아이를 못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아동 센터든 어디든 조건이

안 돼서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정말 떠들다 떠들다... 위 형의 대상이 되고 당연히 방임이 되고요(동작구 학부모).

필요하죠. 우리나라 지금 복지 쪽의 문제가 그거예요. 차라리 차상위는 혜택이 많아요. 사실 우리 방과후나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봐도 너무 복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오면은 여기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다 보호가 되고요. TV 안 보고 컴퓨터도 집에 있으면 완전히 아이들이 부모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이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잘 먹고 보호가 잘되고 공부도 되는데 여기에 못 들어오는 아이들, 그리고 거의 맞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엄마들이 와서 어떨 때는 항의를 해요. 왜 우리는 안 되냐고. 그리고 또 들어오고 싶어도 자라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도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동작구 보육교사).

우리가 너무나 저소득층 수급자들 위주로만 이 복지가 이렇게 보편적인 복지라 아니라 이렇게 특수한 아동에게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낙인찍히는 그게 싫어서 안 보내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저희들도 처음에는 멋모르고 수급자, 차상위 아동 우선으로 모집한다고 써 놔는데 그 문구를 다 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누구나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방치되는 아이들은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플래카드에서도 빼 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의식 자체가 개선이 안 돼서 저기에는 가난한 아이들만 가는 곳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우리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는 그게 좋지 않은 요소죠(군산시 보육교사).

특히 방과 후 보육 공급이 부족한 대도시의 경우 고학년을 위한 공간의 확대와 공부 중심의 센터에서 놀이, 예능, 게임 등 아이들의 다양한 흥미와 재능을 살려줄 수 있는 센터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지역아동센터가 더 생겨야 되고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이 다양한 일을 해요. 다양한 일을 하지만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서도 주력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수급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좀, 학원을 못 가는 엄마들의 요청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는 분위기 자체가 여기에 들어오면 공부하고 물론 여기 프로그램이야 다양하게 많지만 공부를 정말 안 하고 싶은 아이는 여기에 못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가요. 그러면 밖에서 놀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 어떤 아동센터는 그렇게 놀기를 원하는 아이들, 차라리 공부보다는 어떤 공작 이라든지 그런 예능 쪽으로만 하는 센터가 있다면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같이 단체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놀이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면 놀이 다 하고 공부 다 하기에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제일 안타까워요(동작구 보육교사).

4. 아동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역할 및 활성화

가. 지역사회 안전 관련 인프라 개선

마지막으로 아동안전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책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아동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한다. FGI에 의하면 동네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4개 집단 모두에서 지적되었다. 학교 놀이터도 안전하지 않고 동네 놀이터나 공원도 중고등학생이나 아저씨, 할아버지의 음주, 흡연 공간이 된 지 오래이다. 놀이터와 공원을 아동들의 안전한 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공원과 놀이터에서 위해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이다. 이 외에 골목길 가로등과 CCTV의 설치 확대, 그리고 지구대의 지속적인 순찰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아이들은 큰 길보다는 골목길에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골목길 도보순찰이 중요하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 골목길 도보순찰을 정례화함으로써 아이들과 주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안전을 익힐 수 있는 일상의 계기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가

끼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물론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이 길에서 아이들이 놀아서 선생님이 나가서 지키고 차는 다니고 아니면 비좁은 주차장에서 놀고 이렇거든요(동작구 보육교사).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몰려서 자기들끼리 했던 나쁜 행동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모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골목골목이 있는 곳은 (CCTV) 그런 것을 해 뒤도 아이들이 일단 아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니까 순진한 마음에 보고 있구나 하니까 이렇게 나쁜 행동을 그쪽에서는 못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이 골목이 많아도 비교적 안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사고들도 없는 것을 보면요(동작구 보육교사).

저희는 비교적 차가 다니는 큰 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순찰차는 수시로 다니죠. 거기를 벗어나서 주택가로 이렇게 들어갈 때 아이들은 사실은 큰 길에 있지 않고 골목에 있거든요. 순찰을 할 때 힘들어도 도보로 순찰을 그 시간이 있어요. 아이들이 모여 있는 시간이 7-8시 모든 학원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직전에 제가 본 것은 한 7-8시 내에서 9시까지 그 시간에 모여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골목골목에 있다고요. 어떤 때는 집과 집 사이에 끼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차로는 순찰할 때 못 볼 것 같아요. 약간 힘들어도 도보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혼자 지나가면서 보고 있어도 말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진짜 옥하기 때문에 애들아 너희들 여기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기가 참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 지도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동작구 보육교사).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주택에 사는데 다세대 쪽에 살아서 지금 주공이랑 비슷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세대는 월세를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길 자체가 어두컴컴한 거예요. 들어가는 길들이. 그러니까 지역에서 봤을 때는 청주시에서 우범지역이라고 본다면 가로등을 길마다 환하게 하고 CCTV는 다 달아 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청주시 학부모).

지역마다 동마다 자율 방범대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활성화 잘 된 지역은 밤에 일정 시간이 되면 조를 짜서 이렇게 불방망이를 들고 다니면서 우범 지역 같은 곳에 순찰을 돌아요. 그것은 봉사 차원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자치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있더라고요. 그

런 것을 활성화 시키면 좋겠어요(청주시 학부모).

나.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체계 구축

군산시의 동네지킴이와 같이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한편, 자원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지원 등 부분적으로 예산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학교인근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동안전지킴이의 집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대응 매뉴얼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폭력 가해자 경력여부 확인 등 선정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데, 군산시의 경우 아동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장을 중심으로 동네지킴이를 발족시켰다. 이들 동네지킴이가 지역사회내 보호가 필요한 나홀로 아동을 파악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동네지킴이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성폭력 예방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동네지킴이로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만들어 일상 속에서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로 자기 동네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동네지킴이가 그때 발족이 돼서요. 2010년 7월 22일자로요. 통장들 위주로 동네지킴이라고 해서 796명으로 발족이 됐어요.... 그 동네지킴이가 있음으로 해서 과거에 관심이 없던 것이 이제 동네에서 그래도 부모가 맞벌이를 해서 나갔다가 또 이렇게 아이들 혼자 있는 집 몇 시간이라도 있을 때 그런 저기를 파악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주게 되어 있어서 과거에 일어나기 전보다는 그 후로는 상당히 효과가 좋고 지금 그 후로 이렇게 몰라보게 이렇게(군산지역연대).

아까 동네지킴이들도 사실 동네지킴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동네지킴이라고 하면서 애들 혼자 있는데 불쑥불쑥 나타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

네지킴이가 해야 할 일 행동 규범 같은 것을 다 해서 시에서 해서 그분들 교육도 시켰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성폭력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동을 지키겠다고 해 봤자 뭐 이쁘다고 얼굴 좀 쓰다듬어 준 것이 무슨 성폭력이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교육은 절대로 필요하고....(군산지역연대).

특히 학교 인근의 아동안전을 위해 도입된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아동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을 매뉴얼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연대위원들은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을 선정할 경우에 가게 주인이 과거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지 신원조회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의 집 선정과정이 엄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이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아동지킴이집 이렇게 해서 노란 것을 세워 놓잖아요....당신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얼마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마인드를 새로 이렇게 각인시키고 있는지 한 번 보면 아무런 대처 능력들이 없으신 거예요....“저기 누가 쫓아와요” 이러면 그 다음 대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할 수 있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끔 하는지 단지 피신 장소로만 그곳을 이용하는 것인지 그것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대부분 그런 위축받은 기관들이 보호 단계, 잠시 여기 피해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당신들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일이 막상 닥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막상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것이 아까 몸에 배어야 된다고 그러듯이 이렇게 그 다음 순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잖아요....(청주지역연대).

아동안전지킴이의 집을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서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원래 처음에 저희 이런 시설 상담소 같은 데에 서는 그런 데에다 아동지킴이집을 한다고 해서 ‘아이고 이거 큰 일 났다, 고양이한테 생선 말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개 학교

앞에 문구점, 편의점 이런 데에서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도 그런 이름을 붙여주면 차마 그러지는 않겠지 그렇게 했는데....문방구 하시는 주인이 성폭력 가해자인데 그것을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학교 바로 앞이고 그러니까(군산지역연대).

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도니 지역연대의 역할

셋째,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이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이동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관간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연대의 활동을 통해 주민의 인식 변화와 공동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연대가 생활권 단위로 좀 더 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실무 중심으로 관심있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지역연대가 이동안전 관련 정책들 간의 긴밀한 연계를 할 수 있는 중심이 되어 실효성을 강화하고, 참여기관들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이동 성교육 전문가 양성과 성폭력 대처능력 훈련 매뉴얼 개발, 성폭력 사건 신고 및 대응 시스템 전문화 등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연대위원들은 지역사회 이동안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지역연대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그 안에서도 지역 여성단체의 주도적 역할과 여성단체들 간의 전문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동과 여성 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연대 회의체가 활성화되면서 보다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런 연대활동, 간담회를 통해서 자주 접촉하다 보니까 더 얘기하기가 쉬워지고 협조 구하기가 쉬워졌어요. 어제도 아동 안전 지도 제작 관계로 해서 교육지원청에 우리 과장님을 데리고 갔는데 급하게 공문을 요청했는데 답이 하루 만에 바로 왔어요. 이런 것이 그동안 지역 연대 활동을 했던 보람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역할이 빨리 주어지고 또 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군산지역연대).

작년에 학교에서 아이가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 음란 비디오를 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다 그것을 본의 아니게 접하게 된 상태인데 학교에 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거의 다 은폐 수준이어서 그것을 저희한테 상담이 와서... 그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부모 교육도 필요하고 아이들 교육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복지재단에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받아서 성폭력 상담소가 그 프로그램을 8회기, 8회기씩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부모들의 관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네트워크를 하고... 저희 동작구는 어떤 사건이 생겼다고 하면 일단 여성아동보호연대에 있는 위원들께 네트워크가 돼서 저희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같이 가 달라고 해서 부모 개별 상담은 저희가 하지만 교육은 전문 기관에서 성폭력 상담소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은 복지 재단에서 대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런 선례가 지금 몇 건씩 있죠(동작구지역연대).

(가정내 성폭력)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교육의 효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주장하고 신고하고 늦게나마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호소하는 것뿐이고 수없이 저희 솔루션에서도 외부 성폭력은 한 건이었는데 가정내 성폭력이 4, 5건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 장애라든지 이런 장애의 문제인 아동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호소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사례가 지역의 사회복지사나 방과후 공부방 교 사라든지 이런 지역연대 내에서 그래도 이게 발견된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청주지역연대).

현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기초자치단체 안에 하나씩 존재하는데, 지역연대가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긴밀히 연결되기 위해서는 생활권 단위로의 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의 경우 생활권 단위로의 분화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능하면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모두 문을 열어 놓음으로써 민간이 주도하는 실무 중심의 개방형 조직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동작구 상도3, 4동에서는 올해 지역의 아동안전 관련 단위들과 주민들이 참여하여 동단위의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회의를 만들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를 폭력으

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평화를 일구어가기 위한 토대로서 평화인권축제를 열었다.

이 지역연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지역 단위로 더 작은 지역으로 더 쪼개지고 그래서 이렇게 구청과 교육청 이렇게 큰 틀에서도 연계가 되지만 또 작은 틀에서는 개별 학교와 주민자치 회관과 또 지구대, 파출소죠. 파출소 단위가 또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 사당동이면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축이 돼서 이렇게 연대되고 그런 식으로 사당지구, 흑석지구, 신대방상도지구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일단 안면이 있어야 안전망 구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동작구지역연대)?

이런 여성폭력 안전한 사회 만들기가 이렇게 지역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저는 핵심은 주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더 이렇게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치적으로 되고 그래서 안전마을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민들의 힘으로 우리 지역을 우리 주민의 힘으로 바꿔 나간다 그러니까 결국 이웃 공동체를 회복해 나감으로서 안전한 마을이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아무튼 저희도 이제 평화마을 축제를 매년 했던 이유가 그것을 그냥 행사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폭력이나 평화라는 안전이라는 이슈를 마을에 제기하고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저희는 그것을 기관 연계로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주민들을 찾아내서 주민들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과 발로 뛰면서 어느 장소가 좋을까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 또 누가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원봉사자를 조직할까 그런 것을 계속 해 왔었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정책이나 사업이나 교육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예방 교육도 그것을 지역 자원을 가장 잘 알고 또 직접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할 수 있게 역량을 강화시켜 내고 그 분들이 내 자녀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하면 저는 훨씬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네트웍이 되고 이후 사후 조처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런 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자꾸 주민의 역량을 키워내고 발굴해내는 방향으로 가고 그 결과로서 지역 사회의 안전망 그런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됐으면 좋겠어요(동작구지역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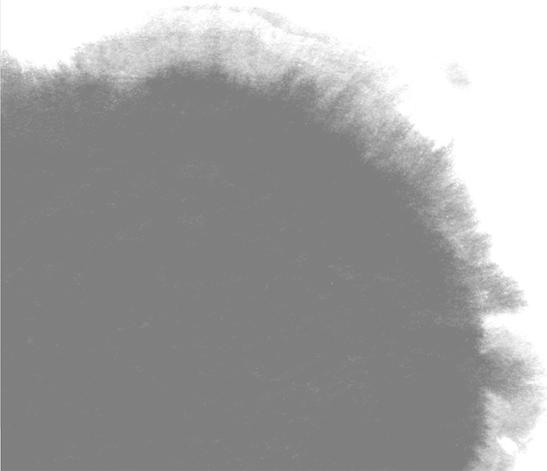
지역연대위원들이 희망하는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정책의 방향은 사람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 교통안전,

아이들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현실의 문제, 그리고 아이들도 인터넷의 영향 때문에 서로를 대상으로 파악하게 만드는 서글픈 현실의 문제들을 바로 잡는 출발점이 바로 사람을 정책의 목적으로 놓는 것이 될 것이다. 사람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목적이 된다는 것은 다른 한편 정책의 결과가 주민들의 역량강화로 나타나고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으로 공동체가 회복되고 안전한 지역사회의 토대가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 지향의 한가운데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활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07

이동안전 관련 정책 개선방안





VII. 아동안전 관련 정책 개선방안

1. 법 제도의 정비

가. 각종 아동·여성관련 법에 ‘안전’ 개념의 법제화

아동과 여성의 안전은 지금까지 그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폭력과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21세기 국가와 사회의 주요 의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앞으로 안전 관련 자료 수집과 구축, 정책 개발과 수행을 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과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관련법에 나홀로 아동을 비롯한 일반 아동을 위한 안전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기초 및 광역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연대 활동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2010년 3월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을 위해 5개년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법에서는 제2조(용어의 정의) 4항에서 ‘아동학대’의 용어를 정의하고 유기와 방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에서는 생활안전 개념을 중심으로 아동의 안전을 도모할 각종 조치들을 기술하고 재난대비 안전과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 및 아동보호구역에서 CCTV 설치 등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 법에서 안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정의(생활안전은 물론, 성폭력·폭력과 일반 범

죄로부터의 보호)는 발견되지 않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제외한 학교 폭력 등 다른 폭력과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기본법」에도 ‘안전’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는 없으며, 안전관련 교육에 관한 조항도 없다. 대신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보호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며, 성폭력· 학교폭력· 기타 폭력과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의무에 관련한 내용은 없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성폭력, 폭력,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유해환경과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포괄적인 안전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관련법 안에 성폭력· 학교폭력· 일반 폭력과 범죄로부터의 안전 개념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 안전을 주요 조사 항목으로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실태가 조사되고 통계자료가 축적되어 대응 방안이 관련법들 간에 유기적으로 강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위한 정부 부처간 연계, 관련 사업간 연계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방과후 아동 돌봄을 체계화하고 통합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2011년 현재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18대 국회에서 「학령기 아동· 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 발의, 2008. 7. 10.)이 발의되어 있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성,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며, 이 법에서 각 부처의 관련 정책간의 협력과 연계 및 통합, 전달체계, 합리적 지원 및 감독을 위한 운영체계 등을 명시하며, 통합적 방과후 활동에 관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을 협의하는 협의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아동의 안전(성폭력· 학교폭력· 기타 폭력과

범죄로부터의 안전) 개념을 명시하고 정기적 안전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지역연대의 자기보호 아동 대상 사업 수행

2011년 신상공개된 성범죄자의 3/4 정도는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한다는 사실(www.sexoffender.go.kr)을 고려할 때 아동의 거주지인 집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성하는 과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의 안전망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전제로 할 때 의도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먼저 국가와 지방정부의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안전정책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연대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역연대의 틀 속에서 지역사회와 생활권 단위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나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생활권 단위로 지역연대의 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안해볼 수 있다. 지역연대는 자기보호 아동의 안전 보장을 중요한 사업을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책임 기구로서 각 지역(동) 소재 초등학교내 자기보호 아동 안전담당 교사(전담 사회복지사), 동 소재 지역아동센터장, 학원연합회 대표자, 지역연대 아동성폭력 예방 및 지원 담당 실무자, 기초의회의원, 담당공무원 등으로 자기보호 아동 사업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지역연대 조례에 자기보호 아동의 안전, 특히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동향 파악 의무조항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자녀들끼리 유학 나와서 자취하고 있는 아이들, 저소득층, 맞벌이, 조손, 한부모 가정의 장시간 방치되는 아이들 파악에 주력한다. 분기별 회의 및 보고, 참여기관별 정보공유(해당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필수)를 명시하며 기관간 연계의 체계화를 추구한다. 아울러 지역의 자기보호 아동

안전 관련 담당자(방과후 교사, 학원강사, 지역아동센터 교사, 아동복지교사 등)에 대한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

3. 아동 안전 교육의 전면적 확대

가. 아동 안전 교육 확대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일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전세계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안전을 위한 정책의 설계와 집행 단계는, ‘정책과 입법의 형성→조직과 기구의 정립→연대와 네트워크 배양→실무자 교육→지역사회 교육 확대→개인적 지식과 능력 강화’로 구축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아동과 여성의 안전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개개인이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가질 때 실현된다. FGI 결과나 언론 보도를 참고할 때 위기 상황시 아동의 대처 능력이 피해의 발생이나 규모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자기보호 아동을 비롯한 전체 아동의 안전 의식과 실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안전 교육은 학기별 1회 이상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자료와 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한다. 아동 안전은 또한 강의보다는 시뮬레이션(simulation)에 의한 훈련(training)의 방법으로 각종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부터 확대되고 있는 안전지도 제작 교육은 안전에 대한 아동의 이해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실천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교사의 안전 지도(指導)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교사는 학교 인편에서 자기보호 아동의 일상생활을 가장 긴 시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아동 안전 확보의 주체이다. 따라서 모든 교사는 성폭력과 범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식과 기술, 상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부모 등 성인에 의해 방임 상태에 놓인 아동 사례를 발굴하고 상담하여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FGI 결과에 따르면, 전문적인 조사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아동 안전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 아동이나 가해자 부모들은 모두 사건을 덮으려 하지만, 피해 아동 역시 진술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이 대응하기가 어렵다. 또한 학교에서 교장이나 교감 등 책임자들은 사건을 드러내기보다는 축소하려는 경향이 많아 일반 교사가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 발령 1년 이내의 신규 임명 교사들에게 성폭력 예방 및 안전 교육 연수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 사건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외부 연계의 필요성과 각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규 학교교사 이외에,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FGI 조사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 중 아동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발견하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밤늦게까지 돌봄전담교사 1인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 그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따라서 아동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다양한 기관의 교사들에게도 안전 교육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아동 안전 문제의 중요성과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 성폭력 사건의 처리는 물론, 안전 교육의 실시와 교내외 안전

프로그램 시행에서도 교장과 교감의 책임과 권한이 막중하므로, 교장과 교감의 연수교육에 아동 및 학교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다.

다.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

아동안전 관련 사건의 대응과 해결에 핵심적인 교사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들의 양성과 교육이 필요한 현실이므로, 아동 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아동의 안전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예방·성평등 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안전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성별·연령별·직업별 교육대상의 차이에 따른 전문화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강사를 양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강사들이 안전지도 교육 등 일선 학교에서 아동 대상 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라. 부모 교육의 현실화

FGI 결과에 의하면, 아동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 수준은 높으나 보호 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고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불안 수준은 더욱 높은 데 비해, 학교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약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 실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저소득층 아동은 폭력 피해 경험이 더 많고 안전 실천 수준은 더 낮았다. 또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관심과 참여가 낮으므로 아버지 안전 교육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모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아동 안전에 대한 부모교육을 적

극적으로 실시하며, 현재 공지문 형식과 일부 집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좀 더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야간·주말교육, 온라인 교육(학교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띄우고 이동을 통해 시청 여부를 점검, 소감문 공모 등의 방식으로 안전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높여 감) 등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 교육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FGI 조사에서 아버지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폭력과 성폭력의 위협에 놓이기 쉬운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부모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에서도 해당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4. 학교의 안전 지원 기능 확대

가. 방과후 자기보호 아동 담당교사 지정

학교는 모든 학령기 아동이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므로 선진국의 경우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은 별도 공간 확보 및 시설비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학교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방과후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학교가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필요시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아동과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과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발굴과 배치,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학부모들에게 안내, 제공하는 역할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신입

생과 학부모들에게 안전한 등하교길 관련 자료는 물론, 지역사회내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관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방과후 자기보호 아동의 상당수는 맞벌이, 빈곤과 이혼, 부모와의 분리 거주 등으로 인해 사실상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은 물론 학교생활과 학업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성인의 보호와 훈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자기보호 아동의 일상생활을 파악하고 상담하며 필요시 적절한 서비스에 연계해 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각급 학교에서 자기보호 아동 담당교사를 지정하며, 학교 내 전담 사회복지사가 있는 경우는 전담 사회복지사를 지정하여 자기보호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한다. 전담 교사는 자기보호 아동의 적극적 파악 및 통계 작성, 정기적 상담을 통한 사례 관리와 외부 서비스기관 연계 등을 통해 사전 예방으로서의 아동 안전을 실천하고 사고 발생시 긴급구조와 사후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나. 학교안전위원회 운영

학교와 주변 지역의 안전을 감시하기 위해 교장, 교감 및 안전담당 교사와 배움터 지킴이, 이동안전지킴이집 대표, 학부모 대표, 관할 지역 경찰 등으로 학교안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학내외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를 중심으로 아동이 생활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서 주요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5.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체계화

가. 계층통합형 돌봄모델 수립

맞벌이 가족 자녀의 경우 중산층이라고 해도 방과후 아동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산층 및 중하층(서민층) 맞벌이 가족 자녀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돌봄과 교육의 균형과 질적으로 우수한 사업 수행을 통해 21세기형 새로운 아동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점차 확대 나갈으로써 향후 방과후 돌봄의 질을 개선해 갈 수 있는 근거지이자 모델로 정립해 간다.

지역아동센터가 수급자 가정 등 계층적으로 제한되어 낙인효과를 발생해 온 것에 비해, 본 아동돌봄센터는 계층적으로 중산층을 포함하여 맞벌이가족 자녀에게까지 돌봄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계층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맞벌이가족 자녀의 돌봄 요구를 수용하고 계층적 통합을 통한 아동 돌봄의 새로운 사회적 모델을 수립하도록 한다. 지역연대 모범지역의 우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나.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의 운영

주말, 공휴일, 방학기간 중 종일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되, 필요한 아동 수를 고려해 지역별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야간 돌봄 프로그램은 초등돌봄교실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되, 초등돌봄교실의 안전성을 높여야 하며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운영한다. 그밖에 지역사회내 공공어린이도서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중산층 가정의 경우 학원 등 다른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원이나 다른 방

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빈 시간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개설할 수 있다. 또 이용에서도 정기적 이용은 물론, 비정기적 이용도 가능하도록 해 선택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방과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여가도록 한다.

다. 자율형 돌봄 공간의 운영

아동의 요구를 반영해, 평일에 필요한 시간에 와서 쉬거나 학습활동, 독서나 취미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아동들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주말이나 방학 중에는 수요조사를 거쳐 일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간 내 활동은 아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새로운 돌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FGI 결과에 따르면, 학교 수업 종료시간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시작 시간 사이에 빈 시간이 있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교에서도 이 시간 동안 자율형 돌봄 공간을 만들어 아동들이 쉬거나 숙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밖에서는 건강가정센터, 지역 도서관,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 학교, 보건소, 교회 등 공공시설물이나 법인 시설물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로 여러 곳에 배치함으로써 아동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일상 활동 공간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이용시간이나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간식거리를 배치하여 아동들이 실비로 구매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한다.

6. 기존 제도의 실효성 강화

가.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은 저학년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므로 고학년 아동은 방과후 학교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직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더욱 확대 개설되어야 하며, 기초수급자 아동중심에서 일반 맞벌이 가정 자녀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야간 돌봄교실의 안전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초인종과 모니터를 설치하고, 귀가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 학교 개방에 따른 화장실 개방과 외부인 출입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동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 아동안전지킴이집

FGI 조사 결과 아동안전지킴이집 담당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고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지킴이집 담당자 교육과 긴급구조 매뉴얼 배포, 정기적인 활동 보고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 시간 교육 이수후 지킴이집 자격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전적 보상(세제 감면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선

설문조사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성교육의 횟수나 경험 여부보다는 성교육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따라서 성별, 연령별 차이를 고려한 성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규모를 학급 단위로 축소하며 교육방법을 실습과 훈련 중심으로 바꿈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아동의 능력을 길러야 한다. 나이가 아동과 여성 대상 폭력과 범죄, 성폭력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궁극적으로 인권교육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라. 아이돌보미 사업의 확대

FGI 조사 결과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등 정기적으로 장시간 홀로 있는 아동의 정책욕구가 있는 희망 가정에게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다른 정책들과 연계해서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참고 문헌

- 강은영(2000),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 외(2010), 『국내외 아동성폭력범죄 특성분석 및 피해아동보호체계 연구』, 여성가족부.
- 고선영 외(2004),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제10권 특집호, pp. 117-146.
- 광주·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2010), 광주·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 5주년 사업보고서.
- 김한균·강은영(2006),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 범죄자 사후관리방안』, 법무연수원.
- 김혜정(200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 대검찰청(1999-2009), 『범죄분석』.
- 대구·경북해바라기아동센터(2008-2010), 대구·경북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 보고서.
- 서영학(2008),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2008 한·미 국제 심포지엄』 2008년 7월 16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2008-2010),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보고서.
- 아동·여성보호 보호대책 추진점검단(2008),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실행계획』, 2008.4.
- _____ (2008b), 『「아동·여성보호 종합 대책」 실행계획』, 2008.6.

- _____ (2010a), 『「아동·여성보호 보호 대책 추진점검단」제10차 회의』, 2010.6.22.
- _____ (2010b), 『「아동·여성보호 보호 대책 추진점검단」제11차 회의』, 2010.9.30.
- 여성가족부(2009), 『2009년도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보고』,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획과.
- _____ (2010), 『아동안전지도 작성 설명회 자료』, 2010.10.25.
- 이명희(2003),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과 그 회복과정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미경(2007), “토론문: 현행 공소시효의 문제점 : 성폭력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아동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2007년 2월 27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이미정 외(2009),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10),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방안(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연대(2009), “아동대상 성범죄의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따른 범죄 행동 특성 분석”, 『제3회 범죄행동분석 학술세미나: 성범죄 프로파일링』 2009년 11월 20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 표창원(2007), “한국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와 대책”,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2007 한·일 국제심포지엄』 2007년 7월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II).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성열(2008), 『홍성열 박사의 범죄자 프로파일링 이야기』, 서울: 수사연구지.
- _____ (2009), “성범죄의 근본적 이해, 유형 그리고 대처방안”, 『제3회 범

죄행동분석 학술세미나. 성범죄 프로파일링』 2009년 11월 20일, 경
찰청 과학수사센터.

홍영오(2008), 『2008년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Action for Child Protection(2008). "When Child Sexual Abuse is
Danger".

Corwin, D. L. and Keeshin, B. R.(2011). "Child Sexual Abuse -
Discovery, Profession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40 Years
of Struggle and Progress in the U.S.A.", Gender Studies and
Policy Review 4: 6-19. KWDI.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9). "Safeguard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Sexual Exploitation".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DCSF)(2008).
"Staying Safe: Action Plan" HM Government.

European Child Safety Alliance(2007). "Action Planning for
Child Safety".

Finkelhor, D.(1979). "Sexually Victimized Children", New York: Free
Press.

_____ (1984). "Child sexual abuse: New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Herman, J.(1981). "Father-daughter inces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Ip, Patricia(2010). "Hong Kong's Recognition and Response to Child
Sexual Abuse"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and Protection, KWDI,
November 19, 2010.

Miller-Perrin, C. L., & Wurtele, S. K.(1986). "The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Movement: A Critical Analysis of Primary and Secondary Approach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8, pp. 313-329.

Russell, D. E. H. & Bolen, R. M.(2000), "The Epidemic of Rape and Child Sexual Abuse in the United Stat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Sanford, L. T.(1980). "The silent children: A parent's guide to the prevention of child sexual abuse", New York: Doubleday.

Tang, C. S.(2006). "Childhood Experience of Sexual Abuse among Hong Kong Chinese College Students" *Child Abuse Neglect* 26: 23-37.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2010). "Community Partnerships: Improving the Response to Child Maltreatment",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Wurtele, S. K., & Miller, C. L.(1987). "Children's conceptions of sexual abus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6, pp. 184- 191.

Wurtele, S. K., & Miller-Perrin, C. L.(1987). "An evaluation of side effects associated with participation in a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 *Journal of School Health* 57, pp. 228-231.

Wurtele, S. K. and Kenny, M. C.(2010). "Primary Prevention of Child Sexual Abuse: Child- and Parent-Focused Approachs," pp. 107 - 120 i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edited by K. L. Kaufman. NEARI Press.